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Lotte Rental 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Lotte Rental 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 >> 2016년 10월 19일 초판 발행
- >> 2019년 3월 15일 개정판 발행
- >> 2021년 7월 31일 사규 등재



CONTENTS

대표이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 선언문	6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조직 체계	8
공정거래 법규 위반행위	9
담합의 범위, 수집 가능한 경쟁사 정보	10
 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개요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12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13
 II. 공정거래 제도 개관	
1.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	18
2. 관계법령	19
3. 관계법령 위반 시 제재조치	20
 III. 회사 주요 업무별 유의사항	
1. 거래 관련 공정거래법	22
2. 불공정거래행위	24
3. 경쟁사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34
4. 소비자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43
5. 내부거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50
6. 표시·광고 시 유의사항	67

7. 약관 관련 유의사항	75
8. 온라인거래 관련 유의사항	88
9. 제조위탁(하도급거래) 관련 유의사항	92
10. 유상운송 및 재대여 금지 관련 유의사항	104
 IV. 행동지침 및 체크리스트	
1. 행동지침	110
2.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크리스트	112
 부 록	
1.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행위	130
2.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지침 목록	133

대표이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 선언문



롯데렌탈은 업계 전반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문화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제반법규 및 윤리규정의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제시해 당사 임직원의 자발적인 준법의식, 윤리의식을 향상시키며, 규정 위반행위에 따른 우발적인 리스크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함으로써 투명(Clean)하고 공정(Fair)한 기업 문화와 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아울러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시스템입니다.

롯데렌탈 내에 자율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CP 운영의 책임자인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했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제작했으며, 협력업체 등 비즈니스 파트너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와 부패방지를 위한 상시적인 교육을 실

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은 공정거래 관련 교육 및 편람 내용을 통해 업무상 행동준칙을 습득하고 준수함으로써 업무와 관련한 불필요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주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업무관행이나 개인적 일탈행위로 보아 가볍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간과하던 행위들이 현재에는 단기간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회사뿐만 아니라 담당자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묻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당사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및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협력업체가 상대방에게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등 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은 애초에 시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차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이고 법적인 책임도 엄중하게 묻고 제재를 할 것입니다.

근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기업의 공정거래 및 부패방지에 대한 국내·외적인 시장 기준도 한층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각종 입법 내용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 확립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및 시행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닌 고객의 신뢰 확보,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및 정당한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에 바탕하지 않은 회사의 미래가치 향상 및

지속적인 성장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공정거래와 관련한 롯데렌탈의 참된 기업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대표적 행동준칙을 정했으니 전 임직원께서는 반드시 준수하고 동참해

주시 것을 당부드리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부터 솔선수범할 것을 약속합니다.

대표이사

김현수

우리는 다짐합니다

1

협력사에게 롯데렌탈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떠한 형태로든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2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금품 등 부당한 이익을 수취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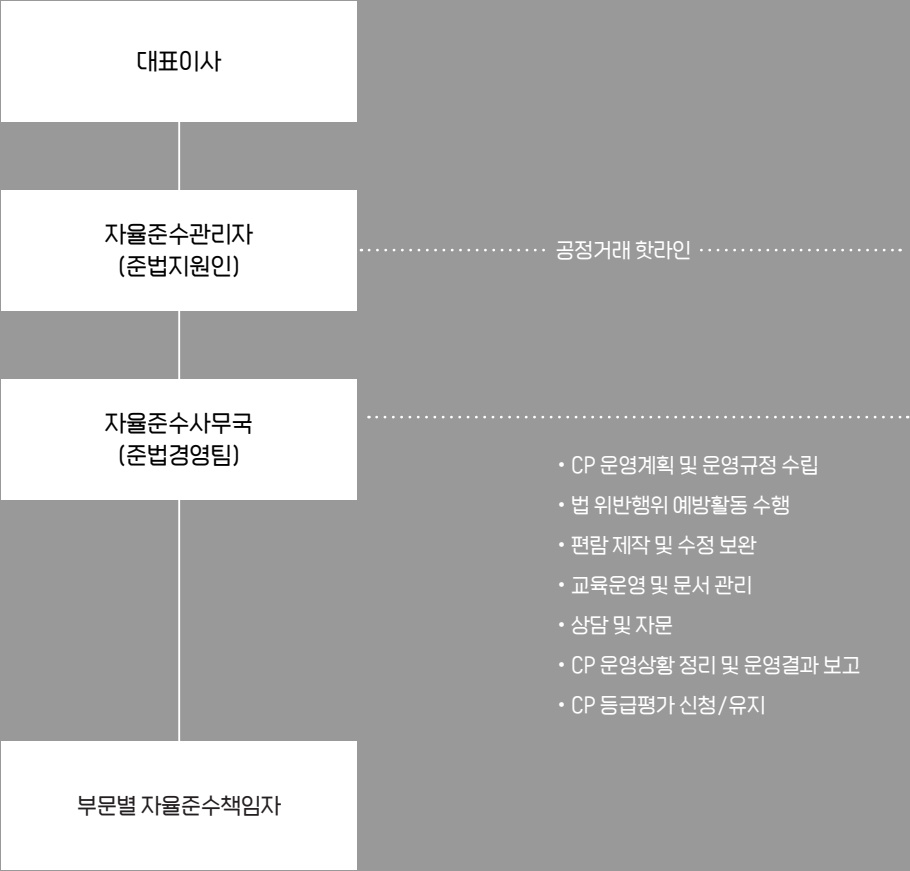
3

경쟁사업자와 시장 거래질서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협의하지 않는다.

4

거래상대방에 따라 거래조건 등의 우대나 차별을 두지 않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조직 체계



공정거래 법규 위반행위

_ 공정거래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

유 형	내 용
거래 거절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특정 거래처에 대한 상호협이 없이 일시 거래물량 중단/축소 또는 계약 해지하는 행위
차별적 취급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비계열회사보다 계열회사에 저가로 판매하거나, 구매 시 계열회사에게 납품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행위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부당한 고객유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우리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거래 강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우리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의 남용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경영간섭, 불이익제공 등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거래사업자에게 동종 업종의 영위가 예상되는 다른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의 위반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사업활동 방해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 경쟁사업자의 기술/영업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부당한 지원행위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행위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격남용행위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행위
출고조절행위	매점매석과 같이 출고를 조정하여 가격에 영향을 주는 행위

타 사업자 사업활동 방해행위	원재료 판매사에게 경쟁사업자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신규 진입 방해행위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경쟁하는 사업자를 배제하는 공동행위를 하는 것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최종 소비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

담합의 범위, 수집 가능한 경쟁사 정보

_ 담합의 행위

유 형	내 용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가격인상, 인하, 유지하는 행위를 할 것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합의하는 경우
거래조건 설정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대금 대가의 지급조건을 공동으로 합의하는 경우
거래 제한	사업자별로 상품의 생산·출고·운송·거래를 제한하거나 용역조건을 제한하기로 공동으로 합의하는 경우
시장 분할	사업자 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 지역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설비 제한	사업자 간에 생산·판매 시설 등 설비의 규모를 합의하거나 설비의 신설,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제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상품의 종류·규격 제한협정	사업자 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 종류·규격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영업의 주요부문 공동관리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경우
입찰 담합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사업자 간에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경락가격,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을 합의하는 경우
기 타	기타 다른 사업자의 영업활동 방해

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개요



-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가. 의의

-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이해 증진 및 자율준수를 위해 도입,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당사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 「자율준수 편람」이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제정·시행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당사의 자율준수 편람을 말합니다.

나. 이해관계자

- ‘회사’ 또는 ‘당사’란 롯데렌탈(주)을 말합니다.
- ‘경쟁사’란 회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경쟁적인 상품을 판매 및 제공하고 있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 ‘거래처(거래상대방)’란 회사와 계약관계가 체결된 협력업체 등을 말하며, 이미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 외에 잠재적 거래처인 사업자를 포함합니다.
- ‘직원’이란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말합니다.
- ‘고객’이란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하며, 거래처 및 이미 거래관계에 있는 소비자 외에 잠재적 소비자를 포함합니다.
- ‘공정위’란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를 말합니다.



2.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지침

가. 공정거래법 및 관계법령

모든 직원은 공정거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공정거래법」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지칭합니다.
- 「표시·광고법」이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칭합니다.
- 「약관법」이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지칭합니다.
- 「전자상거래법」이란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칭합니다.
- 「하도급법」이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칭합니다.
- 「공정거래 관계법령」이란 상기의 법률과 시행령을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통칭합니다.
- ‘법’ 또는 ‘법령’이라 함은 협의로는 해당 법률만을 지칭하나, 광의로는 해당 법률의 시행령, 수임기관의 지침 및 고시를 포함합니다.

나. CP 8대 구성요소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회사는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이러한 기준과 절차는 회사의 문서정책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CP에 대한 체계적인 문서 작성과 보관은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필수 인프라입니다. CP 운용과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대한 자료들은 회사의 문서정책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최고경영자는 모든 직원에게 회사 홈페이지, 그룹웨어, 전자메일 등을 통해 공정거래 관계법령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준수 의무와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처벌 방침을 전 직원들에게 선언해야 합니다.

- 최고경영자는 이사회 결의로써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율준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행에 필요한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그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관리자와 협의해 직원들에게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준수와 법 위반의 사전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계법령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관한 교육이나 행사를 주최하는 등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문화의 확산에 노력해야 합니다.

(3)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계법령 및 회사의 정책과 절차에 정통한 고위 관리자 중에서 선임하되, 영업, 구매·조달, 표시·광고, 고객지원 등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자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준수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조직과 업무를 관장하고, 자율준수 편람의 제정 및 개정,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기획, 수립, 집행, 감시, 제재, 개선 및 운영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집니다.
- 자율준수관리자는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임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서면, 전자문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4)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활용

-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지침서인 자율준수 편람을 작성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부서에 배포해야 합니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및 사례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의 환경 변화, 공정거래 관련법 개정, 심결례 변화 등에 맞춰 정기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 실시

-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전 직원들이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법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구비하고, 공정위 등 관계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받아 교재를 개발합니다.
- 자율준수관리자는 최고경영자 및 필요한 부서 단위로 매 반기마다 1회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합니다.
- 자율준수관리자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이행, 결과 등에 관한 기록을 해당 교육 종료 후 5년간 유지합니다.

(6) 내부 감시 체계 구축

- 자율준수관리자는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사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회사의 제반활동

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에 보고하면서 최고경영자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집행을 합니다.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자율준수관리자는 직원이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조사해 회사의 직원이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위반했거나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최고경영자, 기타 관련 부서 책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안에 따라 해당 업무로부터의 격리, 경고, 전직, 업무정지, 감봉, 해고 등 필요한 징계조치를 취합니다.
- 자율준수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법 위반 사실의 조사 내용 및 관련 자료와 문서를 기록, 보관 유지합니다.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 회사는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해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II. 공정거래 제도 개관



- 1.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
- 2. 관계법령
- 3. 관계법령 위반 시 제재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

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촉진

(1)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금지(법 제3조의2)

가격남용행위, 경쟁자 배제행위,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등 지위남용행위는 금지됩니다.

(2) 카르텔 금지(법 제19조)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가격 등을 사업자들이 합의해 결정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가격 카르텔, 거래조건 카르텔, 입찰 담합 등의 부당공동행위)

(3)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법 제7조)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금지됩니다.

(수직결합, 수평결합, 혼합결합)

(4)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법 제23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거래 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남용, 사업활동 방해, 부당 내부거래, 구속조건부거래)

나. 경쟁원리 확산과 경쟁문화 창달을 위한 경쟁 주창

(1) 기존 경쟁제한 규제를 개선합니다.

진입장벽, 지역제한 등 기존 경쟁제한 규제 개선

(2) 사전 법령협의를 통한 경쟁제한적 규제를 차단합니다.

경쟁제한적 법령 제·개정 시 공정위와 사전 협의

(3) 기업의 경쟁규범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유도합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 내부 경쟁법 자율준수 시스템에 기반

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기반 조성

(1)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엄격히 집행합니다.

(2) 공정한 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라. 소비자주권 실현

(1)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을 엄격히 집행합니다.



2. 관계법령

(1)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수립은 물론이고 집행까지 담당하는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2)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수립을 맡고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집행을 담당하는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등

(3) 기타 법률

「소비자기본법」



3. 관계법령 위반 시 제재조치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계법령 위반사업자에 대해 행위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나. 과징금 부과

(1)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에 100분의 4에서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 매출액의 10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부당공동행위(카르텔) : 매출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불공정거래행위 :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부당내부거래행위는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다. 벌칙

(1) 형사처벌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부당공동행위(카르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불공정거래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부당내부거래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2) 사업자와 직접 행위자 모두 처벌할 수 있습니다(양벌규정).

III. 회사 주요 업무별 유의사항



1. 거래 관련 공정거래법	6. 표시·광고 시 유의사항
2. 불공정거래행위	7. 약관 관련 유의사항
3. 경쟁사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8. 온라인거래 관련 유의사항
4. 소비자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9. 제조위탁(하도급거래) 관련 유의사항
5. 내부거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10. 유상운송 및 재대여 금지 관련 유의사항



1. 거래 관련 공정거래법

가. 거래처에 대해 자기와의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등

- 거래처에 대해 자기와의 거래를 강제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거래처의 자유롭고도 자주적인 판단에 의한 거래가 저해되어, 경쟁자가 경쟁상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됩니다.
- 거래처에 대해 자기와 거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리한 취급을 한다는 취지를 시사해 자기와의 거래를 요청 또는 강제하는 것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거래처에 대해 자기의 경쟁자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

- 거래처에 대해 '타사와는 거래하지 않을 것' 등을 강제할 경우에는 당해 거래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며, 자기의 경쟁자의 경쟁 기회도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거래처에 대해 자기의 경쟁자와 거래할 경우에는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한다는 뜻을 시사하고, 자기의 경쟁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이나 거래처에 대해 자기의 경쟁자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거래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 거래조건의 차별취급행위 등

- 부당하게 어떤 사업자에 대해 거래조건 또는 실시에 대해서 유리 또는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은 거래조건의 차별적 취급으로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됩니다.
- 예를 들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을 이용해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와 비교해 현저하게 높은 수수료를 지불케 하는 등의 행위는 거래조건 등의 차별적 취급행위로 판단됩니다.

라. 부당한 거래 거절 등

- 부당하게 어떤 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에 관련한 상품, 서비스의 수량 또는 내용을 제한하거

나 혹은 다른 사업자에게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키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됩니다.

마. 경쟁자에 대한 거래 방해

- 자기 또는 자기가 주주 혹은 임원인 회사와 국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그의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 대해서 계약 성립의 저지, 계약 불이행의 유인, 그 밖의 방법을 불문하고 그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됩니다.

바. 경쟁회사에 대한 내부 간섭

- 자기 또는 자기가 주주 혹은 임원인 회사와 국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주주 또는 임원에 대해 주주권의 행사, 주식의 양도, 비밀의 누설, 그 밖의 방법을 불문하고 그 회사의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하고, 선동하거나 또는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됩니다.

사. 부당 염가판매

-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그 공급에 필요한 비용을 현저하게 밑도는 대가로 계속해 공급하거나, 그 외 부당하게 상품 또는 역무를 낮은 대가로 공급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됩니다.



2. 불공정거래행위

가. 경쟁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위(구속조건부 거래행위)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7. 가)

- 파트너, 제휴업체 등에 대해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도록 강제할 경우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거래상대방에 대해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에 대한 경쟁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광의의 구속조건부거래에는 가격구속(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거래상대방 및 거래 지역 구속(협의의 구속조건부거래), 배타조건부거래, 기타 거래조건 구속 등이 포함됩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특히 위법성이 강한 가격 구속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규제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로는 배타조건부거래와 거래상대방 및 거래 지역 구속만을 규정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 배타조건부거래에는 배타적 인수계약, 배타적 공급계약 및 이들 양자를 합한 상호배타조건부거래가 있으며, 영업에 있어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배타적 거래 계약인데, 거래상대방이 자기의 경쟁자의 상품을 취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Don't

>>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계약 체결 시 자기의 사전 승인을 득해서는 안 됩니다.

FAQ

Q

파트너와 경쟁사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경쟁사가 대체 거래선을 확보할 수 있다면 문제 없는가?

A

공정거래법에서 구속조건부거래를 금지하는 이유는 구속조건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구매·유통 경로의 독점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곤란하게 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체 거래선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매·유통 경로의 독점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Q

배타조건부거래를 계약조건으로 하지 않고,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유·무형의 메리트를 줄 경우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는가?

A

배타조건의 형식은 배타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물론이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쟁사업자와 거래 시 불이익이 수반됨으로써 사실상 구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유·무형의 메리트를 줌으로써 경쟁사와 거래하는 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효과가 있다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Q

당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와의 거래에서 당사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업체에 대해 타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

A

경쟁사가 당해 업체 외에 다른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배타조건부거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Q

경쟁사 대비 특화된 서비스와 관련된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경쟁사와 공조할 것을 대비, 경쟁사와의 거래에 제한을 두는 것이 불법행위인가?

A

배타조건부거래 또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로서 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큼니다.

Q

업체와 거래 시 일반 관행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경쟁사와 거래를 하게 되면,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소급해 무효화한다는 약정을 하는 것은 불공정행위인가?

A

거래상대방이 되는 업체가 자신의 거래상대방과 어떤 조건으로 거래하든 이는 당해 업체의 자유이므로 이에 간섭하는 경우 경영간섭 또는 불이익제공으로서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

당사가 경쟁사와 전혀 거래한 사실이 없는 업체와 제휴 계약을 하면서, 일체의 억압성 없이 쌍방 모두 타 경쟁사와 거래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둔 경우 불공정행위인가?

A 쌍방배타조건부거래인 경우에도 양 당사자의 실질적인 거래상 지위에 따라서 단방향의 배타조건부거래의 위법성 판단과 동일합니다. 당해 업체와 비슷한 영향력을 갖춘 다른 업체들이 다수 있어 경쟁사업자들이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 불이익제공행위

>>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라)

- 파트너에게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외의 방법으로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파트너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이미 설정된 거래조건을 파트너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거래조건이 불이행함은 물론 거래관계에서 추가적인 법적 혹은 사실적 행위를 강요해 파트너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제공은 적극적으로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작위로 행하거나 소극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용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와 같은 행위 외에도 계약 체결이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불이익제공’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에는 각종의 구속조건, 가격(수수료)조건, 지급조건에 관한 불이익, 계약해지조건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됩니다. 대가의 경우는 파트너가 받는 용역제공의 대가로서 보수, 수수료, 운반비, 수당, 명칭 여하를 불문합니다.
 - 현저히 낮은 대가에 의한 용역제공의 요구가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트너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등 대가의 결정 과정과 방법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단순히 가격과 같은 금전상의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경쟁기반이나 경쟁수단에의 개입 등 자주적 경영에 있어 객관적으로 불이익이 되는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Don't

>> 파트너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 거래상대방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 계약내용의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자기에게만 해석권이 있는 것으로 규정한 조항
- 납품 지체에 대한 지체상금은 규정하면서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지급은 면제하도록 한 조항
-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계약서상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의 내규를 따르도록 한 조항
- 재판관할법원을 일률적으로 자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규정한 조항
- 계약감소에 따른 책임을 파트너에게만 부과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해제 시 인수금 또는 반환예치금을 반환하면서 그 시기를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행위

>> 파트너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 사업자가 파트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거래조건을 변경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

FAQ

Q 경영환경 등 제반사정의 변화에 따라 파트너와의 계약조건을 변경할 경우, 변경내용이 파트너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제공에 해당되는가?

A 대법원은 불이익제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거래조건에 의해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 사이의 일상 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한의 정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과 거래형태, 일반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계약조건을 변경한 내용이 파트너에게 다소 불리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이익제공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Q

A

A라는 업체가 당사 및 경쟁사와 거래를 하면서 경쟁사에 대해서만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는데, 당사에 대해서도 경쟁사와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계약해지 등 페널티를 적용할 경우, 부당한 불이익제공에 해당되는가?

경쟁사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적용함으로 인해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된다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중단하는 행위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나)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와의 거래를 단절하거나 거래를 정지한다거나 거래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특정파트너에게 부당하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경우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중단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

포스코의 파트너에 대한 거래 거절/중단 행위(의결 제2006-012호)

- 사실관계**
피심인은 2002. 1월부터 3월 동안 경인 지역에 소재하는 피심인의 열연지정 판매상들의 철강 수입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일철강(주)이 열연제품을 수입하여 유통시킨 사실을 적발하고, 한일철강(주)에 대한 제재조치로 2002년 1/4분기 미니밀 방식으로 생산한 열연강판 투입잔량 1400톤의 투입 중지와 함께 2002년 2/4분기 판매계획량인 63,000톤의 10~20%를 축소하여 공급하기로 계획하고, 그 후 한일철강(주)에 대하여 2002년 2/4분기 열연제품 공급 물량 63,000톤 중 11.4%(7,200톤)를 감량해 55,800톤만을 공급한 사실이 있다.
- 공정위 판단**
피심인의 물량 감축행위는 거래상대방인 한일철강(주)이 종대한 거래상 의무를 위반해서가 아니라 피심인의 열연강판 유통시장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일철강(주)의 열연강판 수입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Don't

>> 지속적으로 거래하던 제조납품업체가 다른 거래처를 용이하게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당해 업체로부터의 구매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 제조납품업체의 귀책사유나 제품에 특별한 하자가 없고 납품기한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납품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 제조납품업체가 경쟁사업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경쟁사업자의 계열사라는 이유로 거래를 거절 또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 제품구매 또는 시공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불합리한 자격요건을 제시해 지명 또는 제한입찰을 실시함으로써 특정 사업자를 참가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FAQ

Q

A

제휴업체 선정 시 극소수의 업체만이 수용할 수 있고 통상적 업체가 충족시키기 어려운 제휴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거래 거절에 해당되는가?

제휴업체의 선정기준이 계열회사만이 선정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면 제휴조건이 까다롭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

A

제휴업체 선정 시 공개 입찰 없이 평소 당사와 거래하던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경우 부당한 거래 거절이 되는가?

거래상대방 선택은 독과점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자유이므로 수의계약을 했다 해서 부당한 거래 거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Q

A

당사가 특정 제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관리상 이유로 제휴업체 수를 5개로 제한했다. 이후 타사가 서비스 제휴를 요청해서 사정을 설명한 후 거래를 거절한 경우 불공정행위인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A

당사는 종래 특정 제휴 서비스에 대해 10개사와 제휴를 하고 있었는데, 관리 필요상 그 수를 5개로 축소하면서 5개사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 불공정행위가 되는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A사가 당사에 특정 사업 제안을 해왔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당사가 이 업체와 거래를 개시하지 않고 있다가 동일 사업에 대해 더 늦게 제안을 해온 B사와 거래한 경우 불공정행위인가?

A 도덕적 비난의 사유는 될 수 있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열사와 거래하기 위한 거래 거절 등 특별한 경우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됩니다.

Q 당사가 A사와의 상호배타적 제휴 계약으로 인해, B사의 동일 서비스 제휴 요구를 거절한 경우 불공정행위인가?

A 서비스 제휴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사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A사와의 상호배타적 제휴 약정으로 양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Q 당사와 수년간 거래해오던 납품업체가 계약기간 중 특별한 과오는 없었으나, 계약 만료 후 거래선 변경 필요에 따라 해지한 경우 불공정행위가 될 수 있는가?

A 불공정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해 납품업체의 경우 수년간 거래해온 만큼 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믿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업체의 신뢰보호를 위해 계약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계약 갱신의 뜻이 없다는 것을 사전에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 당사에 서비스 제휴 요청을 해온 특정 업체에 대해 경쟁사와 기 제휴한 점을 문제 삼아 제휴를 불허한 경우에도 불공정행위인가?

A 동일한 조건의 다른 업체의 제휴 요청은 받아들이면서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경쟁사업자와의 제휴했다는 점만을 이유로 제휴를 거절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당사가 회사 영업전략을 이유로 특별한 이유 없이 제휴 요청을 거부한 경우에도 불공정행위가 되는가?

A 거래 개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유이므로 당사 영업전략에 따라 제휴요청을 거부했다 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Q 당사는 공정위로부터 불공정계약을 수정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아 이를 이행하려 했으나, 특정 업체가 불응해 시정조치 불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 수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최고장을 보내려고 한다. 이 경우 불공정행위가 되는가?

A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 당사가 거래 개시를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이 대체 거래선을 확보할 수 있다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닌가? 상대방이 거래 거절을 당하더라도 대체 거래선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 거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2. 나)

- 거래 지역 또는 특정 파트너에게 부당하게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거래조건 차별(이행방법이나 대금의 결제조건 차별 등)
 - 거래조건에는 대금지급조건, 수수료, 판매촉진비 등이 포함됨
- 가격차별에서 상대방은 사업자에 한정되지 않고 소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Don't

>> 전속 업체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낮게 책정해서는 안 됩니다.

FAQ

Q 여러 제휴업체와 거래하면서 업체별 협상력, 고객선호도의 차이 등으로 인해 거래조건이 차이가 나는 것이 차별적 취급으로 문제될 수 있는가?

A 차별적 취급이 합리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마. 거래강제행위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5.)

- 협력업체 등 파트너에게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요할 경우 ‘부당하게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

KT의 거래강제행위(의결 제2004-136호)

• 사실관계

KT는 협력업체들에게 회사 기여도(적합성 평가) 등 사후운영 평가결과를 토대로 하위 30%를 협력업체 재선정 시에 탈락시킬 계획과 구체적 평가 요소 및 기준을 통지하면서 상품 판매실적이 사후운영 평가에 반영된다는 점을 고지했다. 이후 KT는 협력업체들에 대한 사후운영 평가를 실시해 상품 판매 실적이 평가요소로 반영된 적합성 평가의 점수가 낮은 협력업체를 2004년도 협력업체에서 탈락시킨 사실이 있다.

• 공정위 판단

KT의 행위로 인해 협력업체는 협력업체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본연의 업인 시설공사 외에 부가적으로 임직원 등을 통해 상품판매를 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부당하게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Don't

- >> 자신의 계열회사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 목표량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않을 경우, 계열회사와의 거래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해서 판매목표량 달성을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 >> 자신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신의 상품판매 실적이 부진할 경우, 협력업체에서 탈락시킬 것임을 고지해 사실상 상품판매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바. 이익제공 강요행위

- >> 사업자가 파트너에게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나)
- 사업자가 행사, 광고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파트너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Don't

- >> 부당한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 파트너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
- >> 계약내용 외의 업무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계약서나 거래관행상 계약내용과 관계없는 업무를 파트너가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계약내용 외의 업무인지 여부는 계약서 및 당해 업종의 거래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사. 판매목표 강제행위

- >> 사업자가 파트너에게 판매 또는 회원확보 등의 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다)
- 사업자가 파트너에게 일정 수의 계약 건 확보를 강제하는 경우 판매목표 강제행위로 봅니다.
 -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수수료의 미지급 등 불이익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되나,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판매목표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Don't

- >> 파트너에게 과도한 계약 체결 목표를 부여한 후 목표를 채우지 못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됩니다.
- >> 영업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실적을 인사고과 및 보수산정 및 지급에 일방적으로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3. 경쟁사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가. 우리 회사와 부당공동행위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고 자신의 행위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항상 점검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해, 경쟁사업자들과 합의해 공동으로 각종 수수료 등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경쟁 제한성이 가장 높은 행위로 인정되어 다른 금지행위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됨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 경쟁사와의 부당한 합의

>>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가격, 거래조건 등에 있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거래조건이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제외한 거래조건이나 대금 등의 지급조건을 말하며, 경품 제품이나 부가서비스의 제공 여부, 리베이트의 유무나 비율 또는 판매수수료 등을 널리 포함합니다.
 - 각종 대여료에 대한 담합은 가격담합의 유형으로 인정됩니다.
 - 부가서비스의 제공 여부가 약관이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단순히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인지와 무관하게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예) ‘대한손해보험협회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대법원 2006.11.23. 2004두8323 판결)에서 법원은 동 협회와 구성 사업자인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긴급출동 서비스의 하나인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오일 보충, 휴즈나 팬벨트 교환 등)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문제의 긴급출동 서비스는 대부분의 차종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한 모든 계약자에 대해 적용되고, 서비스 내용이 사고 발생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자동차손해보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긴급출동 서비스를

보험사업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거래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서비스의 운영이 손해보험회사 재산운영의 안전성·수익성·유동성 및 공공성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출동 서비스는 손해보험사업자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판시

- 경쟁자와의 부당한 합의란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부당한 공동행위는 시장에서 경쟁 압력을 받고 있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시장행위를 경쟁적으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할 시장행위를 의식적인 합의의 통해 상호조정하려고 하는 데에 위법성의 본질이 있으므로, 합의로 표현되는 의식적인 요소의 존재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행행위가 없더라도 규제 대상이 됩니다.
- 부당한 공동행위는 경쟁사업자 간의 경쟁제한행위라는 점에서 경쟁사업자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경쟁 침해행위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와는 구분되며, 독점시장에서보다는 복점 또는 과점 시장구조하에서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 합의란 ‘의사의 합치’를 말하지만, 반드시 청약·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가 일치해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적 양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다만 의사의 연락(communication)이나 접촉(contact)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의사의 합치(meeting of minds) 내지는 공통의 인식(consensus)에 이르러야 합니다.

- 합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진 방식이나 수집할 수 있는 증거의 수준에 따라 입증되는 합의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에 이르는 않고 단순히 상호의식하는 가운데 시장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시장행위가 동조화되는 경우인 이른바, 의식적 병행행위나 동조적 행위는 반드시 합의의 결과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존재한다는 증거만으로는 합의의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합의에 사용되는 증거에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가 있습니다.

- 직접증거로는 합의의 존재나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서면증거와 합의의 성립 사실 또는 그 내용에 관한 진술증거가 있습니다. 기타 공개적 발언이나 가격공표와 같이 비공식적인 합의가 성립했음을 나타내는 의사소통의 증거도 경우에 따라 직접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증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합의를 입증하는 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정황증거로는 합의가 형성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가 형성될 기회가 존재했음을 나타내는 의사연락증거 또는 접촉증거와 기업이 속한 시장의 구조, 행위, 성과와 관련된 경제적 증거가 있습니다. 정황증거 중에서는 의사연락증거 또는 접촉증거와 단독으로 행할 경우에는 스스로의 이익에 반하지만 공동으로 행할 경우에는 참가 사업자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에 관한 시장행위증거가 특히 중요합니다. 정황증거는 직접증거와 달리 어느 하나만으로 합의를 입증하는 증명력을 갖지 못하므로 증명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황증거를 포함한 여러 증거를 종합해 경험칙을 적용할 때 합의를 사실상 추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구 분		증 거
의사연락증거 내지 접촉증거		• 합의가 형성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가 형성될 기회가 존재했음을 나타내는 당사자 간 의사 연락 또는 접촉 사실과 관련된 증거
경제적 증거	시장행위 (담합조장행위 포함)	• 합의의 존재를 나타내는 시장행위(특히, 단독으로 행할 경우에는 스스로의 이익에 반하지만 공동으로 행할 경우에는 참가 사업자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와 관련된 증거 담합조장행위 - 합의의 형성, 유지를 용이하게 하는 다양한 행위(주기적인 정보교환, 가격변동 신호전달 등) • 다른 사업자와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 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1. 상품 또는 용역의 원가 2. 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3. 상품·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
	시장구조	• 합의 형성이 용이한 시장구조와 관련된 증거
	시장성과	•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를 시장 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증거

Don't

>>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시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공동으로 각종 대여료의 인상·인하율(폭)을 결정하거나 일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 기준가격, 표준가격, 최고·최저 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가격 설정의 기준을 정하는 행위
- 할인을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거나 일률적인 원가계산 방법을 공동으로 결정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 거래조건 결정 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대금 지급방법을 제한하거나 이를 결정하는 행위

>> 상품의 생산·출고·수송량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 사업자별로 상품이 판매되는 소비자를 분할하거나, 판매량에 관한 협약을 맺거나 용역조건을 제한하는 등 공동으로 그 수준을 결정하는 행위
- 최고·최저 금융상품 공급량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공동행위 참가사업자 간에 상품량 등의 수준을 정하는 행위

>> 거래 지역·거래상대방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 공동행위 참가사업자 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 지역을 제한하거나 거래처 또는 거래 지역을 공동으로 정해 상호 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특정 사업자와고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우량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상품의 종류·규격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 공동행위 참가사업자별로 종류별로 상품 품목을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품목을 결정하는 등 사업영역을 설정하는 행위
- 신제품의 거래승인 거부, 거래시기 제한 등 새로운 상품의 출고를 제한하는 행위

>> 타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 영업장소의 수 또는 위치를 제한하는 행위
- 직원의 채용 또는 자유로운 상품 개발이나 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광고의 내용, 횟수, 매체 등을 제한하거나 결정하는 행위

행정지도와 부당공동행위 관련성

>> 행정지도의 근거가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고, 실제 행정지도의 목적·수단·내용 및 방법 등이 당해 법령의 규정에 합치되는 경우, 이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닙니다.

>> 그러나 행정지도가 개별 법령에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단체)가 행정 지도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위법성 조각이 되지 않습니다.

- ◆ 행정지도에 관한 여러 개념
 - 행정지도 : 행정기관이 그 임무 또는 소장사무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한 자에게 일정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지도, 권고, 선언, 그 밖의 행위였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행정기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포함합니다.
 - 법령 : 법률, 법률에 기초하는 명령(고시를 포함),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규칙(규정을 포함)을 말합니다.
 - 허가·인가 등 : 법령에 기초한 허가, 인가, 면허, 그 밖의 사업자에 대해 어떠한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 사업자 : 경제적 이익활동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사업자단체 : 사업자로서의 공통의 이익을 증진할 것을 주거나 목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 결합체 또는 연합체를 말합니다.
 - 진입·퇴출 : 기존 사업 분야로의 진입·퇴출, 그 밖의 신규사업 분야, 지역시장 등으로의 진입·퇴출 등을 포함합니다.
 - 가격 : 대여료, 수수료 등 실질적으로 가격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해당 사례(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을 인정한 사례)

한국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쟁제한행위(의결 1990.11.15)

- 사실관계
 - 동 협회는 국내 최대 신동업체인 (주)풍산이 미국 센츨리브라스(Century Brass) 사의 6.5만M/T 규모의 중고 신동생산설비를 수입할 계획이 있음을 알고 1986.9.9 피심인 산하 신동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수차례에 걸친 대책회의를 통하여 (주)풍산의 동 설비 도입을 저지하기로 결의하고, 상공부를 통하여 이를 관철하려 하였으나 1986.11.15 (주)풍산이 상공부장관에게 설비수입 승인을 요청한 후 동 설비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자, (주)풍산의 신동제품에 대한 내수 판매물량을 제한하기로 결의하는 등 (주)풍산의 내수 판매물량을 제한하였다.
- 공정위 판단
 - 공정위는 이에 대하여 상공부장관의 행정지도에 의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피심인에 대하여 피심인 산하의 신동분과위원회가 (주)풍산의 내수 판매물량을 제한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문제된 내용의 「보호요청서」를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에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풍산은 신규증설설비 도입을 위한 상공부장관의 수입 승인을 받기 위하여 피심인의 「보호요청서」내용에 대하여 합의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설사 동 행위가 상공부장관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행위의 주체는 피심인이며 상공부장관의 행정지도는 다른 법률에 근거가 없으므로 이는 동 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 고등법원 판단
 - 이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사업자단체가 주무관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단체로서는 독자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행동하여야 하고, 공정거래법의 운영은 행정부 내에서 독립된 지위를 가진 공정위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므로 설사 사업자 단체가 주무관청인 상공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또는 공정위가 그 시정을 명함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법 1992.1.29. 선고 91구2030 판결).

해당 사례(행정지도를 근거로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

11개 손해보험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결 2001.6.18)

· 사실관계

11개 손해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정함에 있어서 ‘업계 자동차업무부장회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자동차보험요율을 2000.4.1일자에 대하여는 종전 요율수준으로 동결하고 동년 8.1일자에 대하여는 평균 3.8% 인상하는 수준으로 각각 결정하여 시행한 사실이 있다.

·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11개 손해보험회사들이 2000.4.1.부터 시행하는 자동차보험료를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2000.8.1.부터 시행하는 5개 자동차보험종목의 보험료를 일정 비율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고 실행한 사건에서 설령 그것이 금융감독위원회의 방침과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부가 보험료에 대하여는 부가 보험료의 자유화 취지에 따라 그 행정지도의 수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행정지도에 따라 보험료를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결정하였다.

· 대법원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동 보험료의 결정행위는 보험료 결정의 인가권자인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순보험료 및 예정 사업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신고하다 보니 동일하게 유지 또는 인상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합의 추정이 복멸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 12502 판결).

행동준칙

>> 비록 행정기관의 행정지도가 있더라도 이에 무조건 구속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가격결정 등을 자율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 개별 사업자들은 행정지도가 있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에 대해 법적 근거를 요구해서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구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거부해야 합니다.

FAQ

Q 당사 담당자가 친구인 경쟁사 담당자와 몇 번 만나 식사를 하면서 해당 상품의 특성에 대해서 상호의견을 나눈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되는가?

A 상품의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을 뿐 합의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나타난 외형이 일치하고 의견교환 사실이 입증된다면 합의의 추정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당사가 경쟁사의 요청에 따라서 가격(대여료), 거래조건 등을 경쟁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되는가?

A 당사가 경쟁사 요청에 따라 유사한 수준으로 변경했다면 묵시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합니다.

Q 부당한 공동행위 입증에 위해 필수적인 공동성, 즉 합의의 존재는 어떻게 입증되는가?

A 명시적, 묵시적인 합의의 증거가 있는 경우 합의를 입증할 수 있으며, 합의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외관상 행위의 일치가 있고 정황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상당한 개연성) 합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서 주최한 회의 중에 사업자 간 수수료 결정방식에 대해 토의를 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는가?

A 직접적인 합의의 증거로는 부족하지만, 외형상 일치가 있는 경우 합의를 추정하기 위한 정황증거로는 충분한 증거력을 갖습니다.

Q 2개 이상의 사업자가 경쟁제한성이 있는 행위를 해서 공동행위가 추정되는 경우(제19조 제5항), 위원회는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사업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무엇인가? 공동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사업자가 반증해야 하는가?

A 일반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는 더욱 은밀화, 지능화되고 있어 명시적인 합의의 증거를 적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거래법에서는 외형상 행위가 일치하고 일정한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 합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직·간접적인 의사 연락이나 정보교환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수행되어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 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산업구조상 합의 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 등이 그러한 정황증거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합의의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하는바, 최근 법원에서는 ① 동일·유사한 가격책정행위가 해당 사업자 각각의 독자적 경영 판단의 결과로 이루어진 경우, ② 해당 사업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관련된 외부적 요인이 각자의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득이하게 동일·유사한 시기에 동일·유사한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우, ③ 가격 선도업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결정

을 하고 후발업체가 일반적으로 선도업체의 가격을 단순히 모방한 경우 등에는 합의추정이 복멸될 수 있다고 봅니다(서울고법 2000.6.20, 98누10839 대한필프사건).

Q
A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자들 간에 동일한 가격(모든 거래·수수료율)과 거래조건을 결정한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되는가?

행정관청의 법적 근거 없는 행정지도에 의해 사업자 간에 행해지는 공동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공동행위와 구별됨은 물론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법 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법적 근거 있는 행정지도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① 행정지도 이전에 사업자 간 협정이 성립해 있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요청 실시한 경우, ② 행정지도 이후 당해 행정지도의 실시를 위해 사업자 간 공동으로 행정지도에 따르기로 합의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사업자단체를 통해 구체화하는 경우, ③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빌미로 다른 사업자 간에 당해 행정지도에 따르는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등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
A

당사가 대여료를 인상하면서, 당사가 대여료를 인상하면 경쟁사 역시 대여료를 인상할 것이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해 대여료를 인상했고 그 후 경쟁사들 역시 동조적으로 대여료를 인상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사업자 간에 직접적인 의사교환 등을 통한 전면적인 합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경쟁사업자의 행동을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으로부터 경쟁사업자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의식적 동조행위(Conscious Parallelism)라 하는바, 원칙적으로 이러한 행위까지 문제로 삼을 수는 없으나 외형상 일치가 있고 제반 정황으로 보아 사업자 간에 충분히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인정된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을 복멸시키기 위해서는 각 사업자들이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Q
A

8가지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모두 합의사실만 확인되면 법 위반으로 보는가?

현행법상 8가지 유형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위 경성카르텔에 해당하는 가격이나 수량 제한, 거래 지역·상대방 제한 등의 경우 공동행위 참가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높지 않더라도 경쟁제한성이 명백하므로 원칙적으로 법 위반으로 봅니다. 반면 설비의 신·증설이나 상품의 규격제한, 공동관리회사 설립 등에 대해서는 동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도 충분히 감안해 법 위반을 판단합니다. 이 경우에는 참가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4. 소비자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가. 부당한 고객유인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것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해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것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이익제공 또는 제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표시·광고를 포함합니다.
- 제공되는 이익에는 리베이트의 제공이나 가격할인 등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거래조건 설정·변경, 판촉 지원금 내지 판촉물의 지급,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자사 제품으로 교환하면서 덤으로 자사 제품의 과다한 제공 등 적극적 이익제공과 원래 부과되어야 할 요금·비용의 감면, 납부기한 연장, 담보제공 의무나 설정료의 면제 등 소극적 이익제공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이 포함됩니다.

•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해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을 사용한 행위입니다.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에는 품질, 규격, 제조일자, 원산지, 제조방법, 유효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거래조건에는 가격, 수량, 지급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는 국산품 혹은 수입품인지 여부, 신용조건, 업계에서의 지위, 명칭 등이 포함됩니다.

•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해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것은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위계를 제외한 모든 수단이 포함됩니다.
- 거래의 방해는 거래성립 자체를 방해하는 것과 계속 거래를 중단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품제공

해당 사례

삼성전자(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결 제2012-105호)

- **사실관계**
이동통신 3사(SKT, KT, LGU+)는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각각 피심인에게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금원을 요구하고, 단말기 제조 3사(피심인, 엘지전자, 팬택)는 자신의 단말기가 경쟁 모델보다 좋은 단말기로 인식될 수 있도록 각각 이동통신 3사에게 경쟁모델과 유사한 출고가로 출시되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은 이동통신 3사와 각각 개별적으로 단말기 모델별로 협의를 통해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고,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에 부풀리기 방식으로 조성한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 **공정위 판단**
피심인의 행위는 단말기 가격(공급가 내지 출고가) 부풀리기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가 공급하는 단말기의 가격에 관하여 실제보다 현저히 유리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이므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씨제이프래시웨이(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결 제2017-096호)

- **사실관계**
피심인은 2014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자신이 생산한 가공식품을 구매한 727개 학교의 영양사들에게 총 29,740,600원 상당(액면가 기준)의 상품권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 **공정위 판단**
피심인의 행위는 학교 영양사가 피심인의 제품을 현품설명서에 기재하도록 유도하여 피심인의 매출액을 증대시키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경품의 표시·광고

- 경품의 제공기간, 경품의 제공조건, 제공하는 경품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위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표시·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 경품의 표시·광고 시 체크포인트

- 최초 표시·광고 후 경품종류 및 제공조건을 변경하거나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 경품의 제공대상이나 제공조건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그 한정된 내용을 반드시 표시·광고해야 합니다.
- 여행상품의 경우 교통, 숙박, 식사 등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광고해야 합니다.
- 놀이시설의 경우 이용시간, 놀이시설의 제한 등이 있을 때는 그 제한된 내용을 반드시 표시·광고해야 합니다.

Don't

>> 미풍양속이나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기만적인 현상방법으로 경품제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모 이동통신의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한 시간 내에 소주를 가장 많이 먹는 자를 선정해 소비자 현상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FAQ

Q
A

당사가 고객에 대해 별도 조건 없이 경품을 제공한 경우에도 불공정행위가 될 수 있는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당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이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부당한 이익제공으로 가격, 품질, 서비스 비교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해당 업계 사업자 간의 가격 등에 관한 경쟁을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 수립 내지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행위로 경쟁사업자들 사이의 상품가격 등 비교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저해되거나 다수 소비자들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게 되는 등 널리 거래질서에 대해 미칠 파급효과의 유무 및 정도, 문제된 행위를 영업전략으로 채택한 사업자들의 수나 규모, 경쟁사업자들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지, 관련되는 거래의 규모 등에 비추어 해당 행위가 널리 업계 전체의 공정한 경쟁질서나 거래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 등과 함께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과 정도, 제공의 방법,

제공기간, 이익제공이 계속적 반복적인지 여부, 업계의 거래관행 및 관련 규제의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나. 사원판매

>>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원판매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영업상 예속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을 인수하게 해 사원판매하도록 한 경우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규정을 적용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사원판매를 하게 한 행위(거래강제)’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

LG텔레콤의 사원판매행위(의결 제2001-153호)

사실관계

LG텔레콤은 계열사를 대상으로 019 가입확대를 위한 캠페인인 ‘L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관리자 10대, 사원 5대로 임직원별 목표량을 설정하여, 임직원 추천가입 신청서에 추천인명(임직원명), 추천인 사번 등을 기재도록 하고 총무팀이 ‘임직원 추천 가입 수량’ 및 ‘목표달성율’을 매일 집계하여 각 사업부서 책임자에게 통보하는 등의 실적 관리를 한 결과 당초 목표량의 101.2%에 달하는 14,820명의 가입자를 유치하였고 동 사원판매에 피심인의 임직원 2,508명 중 2,376명이 참여하여 임직원 참여율 94.7%를 달성하였다.

공정위 판단

피심인이 ‘L프로젝트’를 직접 주관한 당사자이고 각종 실적 관리 등으로 피심인의 임직원들에게 가입을 사실상 강제하였고, 이는 목표달성율 101.2%, 임직원 참여율 94.7% 등에서도 입증되는 점, 임직원들이 자신의 경제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가입비를 대신 부담한 비율이 81.2%나 되어 사실상의 강제성이 추정되는 점 등에서 피심인의 행위는 부당한 사원판매행위로 인정하였다.

Don’t

>> 자사의 임직원에게 직급별 또는 부서별로 계약 할당량(판매목표)를 정해주고 판매목표 미달 시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정황으로 보아 판매목표가 할당되고 할당된 판매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부서회의를 개최해 판매목표 달성여부를 체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원판매에 해당됩니다.

FAQ

Q 사원판매를 하면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가?
A 그렇지 않습니다. 사원판매행위는 그 행위를 달성하기 위해 강제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강제성의 수단으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금전적·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이며, 단순히 목표를 달성한 사원에 대한 보상행위만 있었다면 부당한 사원판매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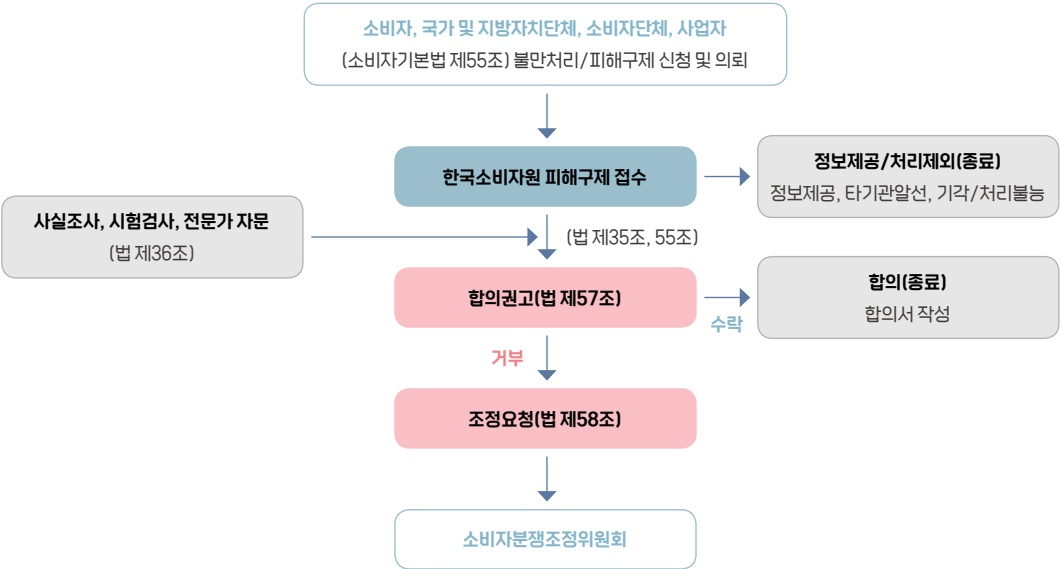
Q 회사가 특별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영업 부서에 있지 않은 직원에게 목표량을 할당,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한해 해외여행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 불공정행위인가?
A 원칙적으로 사원판매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강제성을 전제로 합니다. 즉 사원들에게 수량을 할당하고, 판매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원들의 판매를 독려하고 실적이 우수한 사원에게 해외여행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특별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Q 회사가 영업부서 직원들에게 계약목표를 할당하고, 주기적으로 판매실적 점검, 대책수립 등 목표 달성을 지속적으로 독려한 경우 불공정행위인가?
A 영업직 사원들은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들이므로 이들에 대해 판매실적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독려한다고 해서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Q 회사가 판매목표 달성과 인사고과를 연계해 목표 미달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불공정행위인가?
A 영업직 사원 외에 다른 사원들을 대상으로 불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계약 체결 등의 판매를 강요했다면 사원판매에 해당합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및 기준

>> 피해구제 절차



1. 소비자상담

소비자피해 발생 시 소비자상담을 신청하면 대응 방법 안내 등 신속한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으며, 피해구제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2.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통보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피해구제 접수사실이 통보됩니다.

4. 사실조사

소비자의 주장과 사업자의 해명을 토대로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등을 통해 사실 조사를 실시합니다.

5. 합의권고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건은 종결됩니다. 사실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의권고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 소비자기본법상 피해구제조항

•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56조(위법사실의 통보 등)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58조(처리기간)

원장은 제5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 내부거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가. 부당지원 1 - 무상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계열회사, 특수관계인, 비계열회사에게 가지금, 대여금, 부동산, 기업어음, 주식, 인력 등을 상당히 높은 가격이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제공해 이들을 지원해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우량한 회사(지원주체)가 부도 직전에 있는 계열사(지원객체)에게 시장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저리의 자금을 대여해주거나 계열증권사(지원객체)에 주식투자의 의도가 없이 증권예탁금 명목으로 일정 기간 자금을 저리로 예치하는 경우 혹은 부실한 계열사(지원객체)로부터 자금을 빌린 후 시장금리보다 상당히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행위
- 사업자(지원주체)가 부실한 계열사(지원객체)를 지원해주기 위해 그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시장할인을 보다 상당히 낮은 할인율로(즉 고가로) 매입하는 행위 혹은 계열사(지원객체)를 지원해주기 위해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
- 사업자(지원주체)가 계열사(지원객체)의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자신이 부담하는 경우
- 지원객체가 지원행위로 인해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원객체가 지원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 당해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타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 관계법령을 면탈 또는 회피해 지원하는 등 지원행위의 방법 또는 절차가 불공정한 경우

해당 사례

산업은행의 부당지원행위(의결 제2008-241호)

• 사실관계

산업은행은 2004.3.30일부터 2005.3.18일 기간 동안 자회사인 산은캐피탈(주)이 발행한 사모 사채 총 3,500억원을 7회에 걸쳐 4.79%에서 5.86%의 낮은 금리로 인수하여줌으로써 영업조치 등이 내려질 위기 상태에 있는 산은캐피탈(주)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

• 공정위 판단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산은캐피탈(주)의 무보증사채 인수 시 적용한 금리는 4.79% - 5.86%로서 산은캐피탈(주)의 2004.4.8일자 공모사채발행금리인 8.0%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이며, 산은캐피탈(주)과 신용등급이 유사한 동종업체의 채권 시가평가 기준수익률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서 지원주체는 이를 통해 금리 차이만큼의 현저한 경제상의 이익을 지원객체에게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동양 기업집단 계열사의 부당지원행위(의결 제2008-305호)

• 사실관계

동양종합금융증권(주), 동양생명보험(주), 동양파이낸셜(주)는 2004.10 역외펀드인 토러스펀드를 통하여 계열회사인 마이클럽닷컴코리아(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동양캐피탈(주)로 하여금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마이클럽닷컴코리아(주)가 발생한 전환 사채의 원리금 47억원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공정위 판단

피심인들이 토러스펀드의 펀드운용잔액을 사용하여 마이클럽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이 클럽으로 하여금 동 유상증자자금 5,000백만원으로 동양캐피탈(주)에서 전환사채 원리금 4,705백만원을 조기 상환하도록 한 행위는 1. 지원주체는 피심인들이며 토러스펀드와 마이클럽은 단순한 매개체에 불과하며, 2. 마이클럽이 대규모 자본잠식 상태로 청산이 불가피한 부실기업임을 알고서도 토러스펀드가 마이클럽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마이클럽이 동양캐피탈(주)의 전환사채를 조기상환한 행위는 결국 무상으로 동양캐피탈(주)에게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계열회사인 동양캐피탈(주)을 지원한 행위로 인정하였다.

Don't

>> 내부거래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계열회사에게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
- 대여금 및 대여금 이자 미회수, 지연회수 행위
- 제품·용역 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 계열회사가 비계열회사 등의 예치금에 적용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계열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하는 행위
- 주식매입을 하지 않으면서 증권예탁금 명목으로 계열증권회사에 일정 기간 자금을 저리로 예탁하는 행위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 수수료, 자산 매각 대금 등의 회수를 지연하는 행위
- 보유하고 있는 지원객체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 합병교부금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태만히 하는 행위
- 지원객체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 대해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용자금을 앞선해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 소속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하는 행위
- 은행에 외환을 저가로 매각해 계열회사로 하여금 동 은행으로부터 외환을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게 하는 행위
- 계열회사와 공동 광고주로 표시한 광고의 광고비를 전액 지급하는 행위
- 지원객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사 매입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는 행위
- 지원객체의 신용등급에 적용되는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행위
- 역외펀드를 이용해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저리로 매입하는 행위
- 금융회사의 특정 금전신탁에 가입하고 동 금융회사는 동 자금을 이용해 지원객체가 발행한 기업 어음을 저리로 매입하는 행위
- 지원객체가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로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계열사,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하는 행위
- 지원객체가 실시하는 유상증자 시 발생된 실권주를 특수관계인 등이 고가로 인수하거나 금융회사를 통해 우회 인수하는 행위
- 유상증자 주식의 발행가격이 주가추이, 주가전망, 재무구조 등에 비추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에 참여하거나 기존 주주인 특수관계인 등이 자기의 지분을 현저히 초과해 인수하는 행위
- 계열회사가 보유한 타회사 주식을 장내에서 시세대로 매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외거래로 시세보다 고가로 매입하는 행위

-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상속세법에서 정한 평가가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상속세법에 의해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평가해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포함)
-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금리수준으로 발행된 후순위사채를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하는 행위
- 비계열금융회사에 후순위 대출을 해주고, 동 금융회사는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한 저리의 회사채를 인수하는 행위
-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행위
- 전환권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환가격은 높고 이자율은 현저히 낮게 발행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하는 행위
- 경영권 방어목적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전환행사로 인해 포기되는 누적이자가 전환될 주식의 시세 총액과 총 전환가액의 차액보다도 큼에도 불구하고 전환권을 행사하는 행위
- 사무실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는 행위(매매행위 포함)
-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행위
- 사무실 등을 임대한 후 임대 보증금을 지연해 수령하는 행위
- 사무실 등을 임차한 후 임차 보증금을 정상적인 경우보다 선지급하는 행위
- 임차한 건물의 유지 관리비를 과다 지급하는 행위
- 임차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을 과다 지급하는 행위
- 지원주체가 보유한 채권(외상매출채권 등)을 특수관계인 등에게 저가로 매각하는 행위
- 회사채 하인수를 통해 계열 증권회사에게 회사채 증개수수료를 지원하는 행위
-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한 환매조건부채권(RP)을 고가로 매입하는 행위
- 수익증권 판매 보수를 과다 지급해 계열증권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영업 양수도, 자산 매각, 거래조건 등의 차별을 통한 지원행위 등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하는 행위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하는 행위

FAQ

- Q

A

계열회사(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법에 근거해 계열회사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법에 근거했다고 해도 수의계약에 의한 물량이 많거나 낙찰율이 경쟁에 의한 낙찰율보다 높을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에 근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적습니다.
- Q

A

계열사와의 거래를 위해서는, 부당지원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경쟁 입찰 등의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가?(수의계약만으로 충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

계열사와의 거래 시 반드시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합당한 사유가 있고,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비교해 가격 등 거래조건에 있어서 현저히 유리하게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Q

A

자회사에게 유지보수 업무위탁을 주면서 위탁수수료로 6개월짜리 어음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자회사에게 6개월짜리 어음으로 주었다 해서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자회사에게는 짧은 결제 기간의 어음을 주고 비자회사에게는 긴 결제 기간의 어음을 주는 것은 부당한 차별취급에 해당될 우려가 있습니다.
- Q

A

자회사를 통해 그 자회사의 납품업체에게 우리 회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권유라고는 하나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으면 구입 강제에 해당될 우려가 있습니다.
- Q

A

공정위가 지원금액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는가?

‘지원금액’이라 함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은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원행위 요건’(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할 것)과 ‘부당성 요건’(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두 가지 요건 중 지원행위 요건의 결과인 지원금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Q

계열회사와 공동광고 집행 시, 특정 심결례에서는 정상가격을 법인세법상 기준으로 기술하고 있고, 다른 심결례(현대증권)에서는 공동광고에 수반한 각 상품의 매출액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

- A

특정 심결례 ‘SK텔레콤(주)의 그룹 공동광고비 대지급을 통한 지원’[2003.10.20.]의 경우, 그룹 CI (Corporate Identity) 변경작업에 따라 이루어진 그룹 공동광고로서 그룹 계열사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광고비 분담율을 산정했습니다. 이때 광고비 분담기업 선정 및 매출액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 규칙에 의거 매출액 비중이 1% 미만이거나 매출액 대비 광고비 비율이 0.1% 미만인 법인은 제외했고, 최종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은 매출액의 2배까지 매출액을 부담해 적용했습니다.

한편, ‘현대증권(주)의 현대투자신탁증권(주)에 대한 광고비 대지급을 통한 지원’(1999.10.28.)의 경우,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펀드 판매달성도를 알리기 위해 이루어진 공동광고로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펀드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광고비 분담율을 산정했습니다.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 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말하며, 따라서 정상가격은 일률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며,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해야 합니다(정상가격에 대한 판단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참조)

두 심결례에서는 모두 계열사에 대한 광고비 대지급을 통한 지원행위가 있었으나, 위원회에서 위 원칙에 의거 각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 정상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 Q

A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모회사사인 경우, 계열사와의 사무실 임대계약 만료 시 계약 갱신을 하는 대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료 외에 별도 추가금을 부담시킨다면 이는 임차인(자회사)의 임대인(모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가?

임차인(자회사)이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동일하게 임대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갱신을 대가로 임대인(모회사)에게 별도 추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추가금이 상당히 높은 대가에 해당해 임대인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다면 지원행위가 성립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지원행위로 인해 임대인인 계열회사의 경쟁조건을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해 임대인이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합니다.

나. 부당지원 2 - 물량몰아주기

>> 계열사에게 상당한 규모로 물량을 몰아주는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계열회사 또는 비계열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계열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행위
- 부당하게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 ◆ 상당한 규모의 거래란
 - 거래규모는 거래수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거래조건에 포함합니다.
 - 현실적인 관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유동성의 확보 자체가 긴요한 경우가 적지 않음에 비추어 상당한 규모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 ◆ 상당한 규모의 거래 →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 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 추이 및 신용등급의 변화 정도,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사례

현대자동차의 계열사의 부당지원행위(의결 제2007-504호)

- 사실관계
기업집단 ‘현대자동차’는 기업집단 내의 물류업무를 일원화·통합화하기 위해 물류전문업체를 설립하기로 하고, 기업집단 ‘현대자동차’의 동일인 ○○○가 40%(10억원), 그의 장남이 60%(15억원)를 출자하여 2001. 2. 글로비스(주)(구 현대로지텍)를 설립 이후 현대자동차(주), 현대자동차(주), 현대모비스(주), 현대제철(주)은 자신들 제품의 생산·판매에 부수하는 완성차 배달탁송, 철강운송 등 각종 물류업무를 새로 설립된 계열회사인 글로비스(주)에게 사업양수도나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상당 부분 몰아주기함으로써 2001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총 1,363,727백만원 상당을 글로비스(주)와 거래하였다.
- 공정위 판단
법 위반으로 보는 지원성 물량은 484,440백만원, 지원기간은 2004. 6월까지로 현저성이 위법성 판단기준이 되었다.

Don't

>>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해서는 안 됩니다.

-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 대금결제방식을 기존에 비해 유리하게 변경하기

FAQ

Q **A** 정상가격이라도 상당한 규모의 물량으로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부당지원에 해당되는가?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인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 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 추이 및 신용등급의 변화 정도,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Q **A** 당사 고객에 대한 경품행사를 위해 계열회사가 제작한 물품을 상당한 규모로 구입했을 경우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가?
단일거래나 1회성 거래에서 상당한 규모는 공급사인 계열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구입자인 계열회사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품을 매입했거나, 공급회사의 공급능력 등 이상으로 많은 물품을 주문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통한 부당내부거래는 여러 계열회사가 장기적이고 계속적으로 물량을 몰아주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상당한 규모로 거래했다 해서 바로 부당지원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부당지원행위로 봅니다.

다. 부당지원 3 -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상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인 직거래관행 및 기존의 거래 형태와 달리, 지원객체를 통해 제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면서 실제 거래에 있어 지원객체의 역할을 지원주체가 수행하거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역할이 중복되는 등 지원객체가 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경우

라. 계열사 차별 취급

>>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계열사 차별취급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해 계열회사와 다른 거래상대방을 현저하게 차별하는 행위로 흔히 상품·용역을 통한 부당지원행위라고 말합니다.
- 제7호의 자금·자산·인력의 부당지원행위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집중 역제의 성격도 지니고 있지만,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가리지 않는 자금·자산·인력의 부당지원행위와 달리 계열사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의 판단기준으로서 대법원에 따르면, 특정 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영업활동을 한 결과가 계열회사에 유리하게 귀속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차별행위의 동기, 효과의 귀속주체,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의 주된 의도가 계열회사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기업집단의 경제적 집중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해당 사례

현대자동차 계열사의 차별취급(대법원2007.2.23선고2004두14052)

- **사실관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현대캐피탈과 전속적인 오토할부금리 정산약정 체결.
- 양사는 2002.4.8자로 전 차종에 대해 현대캐피탈 이용고객에게 적용되는 오토할부 판매금리를 종전에 비해 상당 정도(1.25% - 1.8%) 인하[2002.3 - 4월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 7.6% 내외, 할부금리 인하: 7.75% (24개월), 8.25% (36개월)]
- 당시 C캐피탈, D카드의 자체 할부금리는 9%(24개월), 10%(36개월) 수준(현대자동차는 C캐피탈과 D카드의 오토할부약정 체결 요청을 거부)
- 금리인하 후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에서의 현대캐피탈 시장점유율이 단기간에 급증[현대캐피탈 점유율: (3월)46.4%→(4월)57.8%→(5월)61.4%→ (6월)57.2%,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할부구매고객 중 현대캐피탈 점유율 :(3월)63.5%→(4월)76.4%→(5월)81.0%→(6월)79.9%]

- 오토할부금리 정산약정[오토할부: 자동차사가 특정 할부금융사와 할부금리 정산약정을 체결하고 고객에 대한 할부금리는 자동차사가 직접 결정하되, 할부금융사에는 정산금리(회사채 수익율 + 일정 마진(1.8%수준)을 보장해주는 방식/오토론 : 자동차사와 무관하게 할부금융사가 자체 개발 판매하는 할부금융상품], 고객들은 두 방식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오토할부고객 이용고객과 현금 구입고객(비계열 할부금융사 포함)을 거래조건 및 거래내용에 대해 차별한 행위로·과징금 부과]

거래상대방 인정 여부: 직접의 거래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직접의 거래상대방의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상대방과도 거래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 간접의 거래상대방에도 성립하고, 법인격이 다른 사업자라도 실질적인 지배, 피지배에 있는 경우 복수의 사업자를 동일한 사업자로 보아 거래상대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최종소비자도 차별적 취급의 대상인 거래상대방이 될 수 있음. 그러나, 비계열 할부금융사와 원고(자동차사) 사이에는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원고들이 비계열 할부금융사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음

차별적 취급 성립 여부: 오토할부를 이용한 자동차 구매고객뿐만 아니라 현금 구입고객(비계열 할부금융사 고객) 역시 오토할부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차별적 취급이 성립하지 않음

【서울고법 2004.10.28 선고 2002누16827판결】

차별적 취급 성립 여부: 원고와 비계열 할부금융사 사이에 직접적 거래 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비계열 할부금융사들도 원고들이 제조, 판매하는 자동차의 할부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자신의 할부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원고와 현대캐피탈 및 비계열 할부금융사 사이에는 고객을 매개로 하는 실질적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대 캐피탈과의 오토할부약정에 기하여 할부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고객들을 차별하는 행위라 할 것이며, 이러한 차별로 고객 증가라는 차별효과가 귀속되므로 현대캐피탈을 유리하게 하는 차별적 취급행위에 해당함

차별적 취급이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 여부: 원고가 하나의 할부금융사와 오토할부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거래비용의 감소라는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점, 여러 할부금융사와 약정 체결 시 영업정보 등이 누설될 가능성이 있는 점, 경쟁업체인 타 자동차사도 특정 할부약정사와 오토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점 등, 전속 약정 자체가 A캐피탈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할부금리 인하 직전 6개월간 정산금리가 9.1%이고 현금판매 시 할인율이 0.3%이므로

여러 할부 유형에 대한 가중평균 할부금리를 8.8%로 정하였고 이중 일부 상품의 금리가 1% 이상 낮아진 것이라는 점 등 감안 시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시장 상황이 자동차 할부금리에 대한 사회적 인하 압력이 있었던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주된 의도가 현대캐피탈이 속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경제력 집중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차별적 취급의 공정거래 저해성 유무: 위법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차별적 취급의 원인이 된 사업경영상의 필요성 등 다른 사유와 아울러 공정한 거래질서의 관점에서 평가하여 공정거래 저해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사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약정을 체결하였고, 자동차 할부금리의 사회적 인하 요구, 경쟁업체의 할부금리 인하 등과 같은 사회적 여건과 영업환경 변화에 대처하고자 적정 수준으로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 저해 우려가 있는 행위라 하기 어려움【대법원 2007. 2. 23, 2004두14052판결】

Don't

>> 다음과 같은 행위는 계열사를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해서는 안 됩니다.

- 제품의 품질이나 거래기간, 거래물량 등의 합리적 차이가 없음에도 비계열회사보다 계열회사에 저가로 판매하거나, 부품 등을 구입함에 있어 비계열회사보다 계열회사에게 납품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행위
- 자기 계열 유통업체로부터는 어음으로 대금을 수령하면서 비계열 업체에 대해서는 현금지급을 요구하는 행위
- 특정상품을 구입 또는 공급함에 있어서 사규, 공문 기타 어떤 방법으로든지 계열회사와 우선적으로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유도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에게는 비계열회사보다 어음기간을 짧게 해주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금결제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행위

FAQ

Q 당사가 제휴업체 선정 기준을 계열사에 유리하게 해서 타 경쟁업체를 탈락시킨 경우 계열사를 위한 차별행위가 되는가?

A 객관적이고 합리적 조건이 아닌 계열회사에 유리한 조건만을 기준으로 계열사를 제휴업체로 선정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당사가 특정거래를 함에 있어서 공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실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지원행위나 계열사 차별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가?

A 계열사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상관행에 부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 업체 선정과정에서 가격이나 기술 수준이 별 차이가 없을 경우 계열사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가?

A 거래상대방의 선택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므로, 판매조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계열사를 납품업체로 선정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Q 우리 회사에 시설유지 보수를 하는 계열사인 K사와 비계열사인 S사에 대한 대금 지급에 있어 K사에게는 현금으로, S사에게는 60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A 부당한 차별취급에 해당됩니다.

마.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또는 그 친족)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와 거래해 특수관계인(동일인 또는 그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동일인 또는 그 친족)이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자회사(50% 초과 지분 보유)도 규제 대상에 포함 됩니다.

- 의결권 유무는 무관하며, 직접 지분만 계산합니다.
- 부당지원행위 중 유리한 조건 등, 물량 몰아주기와 같이 달리 공정거래 저해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무관하게 처벌의 대상이 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 거래조건 등이 공정하더라도 자신이나 그 자회사가 수행하던 사업을 특수 관계인이 지분을 가진 회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경우 규제 대상이 됩니다.
[생산위탁, 판매위탁, 구매위탁, 지원업무위탁(IT, 물류, 광고, 건설부대 서비스, 빌딩관리 등)]
- 비용절감 혹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아웃소싱이 사업기회의 유용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합니다.

금지 유형		
금지 유형	적용 기준	적용 제외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자금·자산·상품·용역·인력 등을 정상이격보다 상당히 높거나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 ※ 정상이격 :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 상태 등이 유 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의 정상 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	정상이격과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 총거래금액이 50 억원(상품·용역의 경우 200억원) 미만의 경우 ※ 비율요건(7%)과 거래금액요건(50억원 또는 200억 원)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사업기회 제공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회사 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회사가 당해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았거나 그 밖에 회사 가 합리적 사유로 사업 기회를 거부한 경우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정상적인 거래 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 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정상이격과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 거래금액이 50억 원 미만의 경우
합리적 고려나 비교 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 물량 몰아주기)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사업능력, 재무 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 규모 및 시기 또는 거 래조건 등)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에 대해 객관적· 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 통상적으로 행해지거나 행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 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거래규모가 상당한 경우 행위객체의 사업능력 등을 외 부업체와 비교할 때 외부업체가 우월함에도 대주주가 일정 지분을 갖는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 함입니다. - 대주주가 지분을 갖는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의 핵심입니다.	상품·용역의 연간 거래총액이 거래상대방 매출액의 12% 미만이고 200억원 미만인 경우(이때 연간 거래총 액은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 우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 또는 효율성이나 보안 성 또는 긴급성 등 거래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해당 사례

롯데쇼핑의 계열사의 부당지원행위(의결 제2007-504호)

사실관계

롯데쇼핑은 비계열 특수관계인인 (주)유원실업에 수도권 소재 8개, 계열회사인 (주)시네마통상에게 지방소재 8개 영화관 매점을 저가로 임대하였다.

롯데쇼핑은 영화관 매점이 최고 영업이익율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임대매장들의 임대 수수료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임대하여 과대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임대수수료율은 유사한 임대매장들에 비해 평균 15-37% 낮은 수준으로 유원실업은 3년 만에 53억원의 이익을, 시네마통상은 2년 만에 62억원의 이익을 실현하였다.

>> 적용 제외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 비용절감 또는 판매량 증가나 품질개선·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상품의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거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경우에는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이나 경쟁력이 부품이나 소재, 기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열사의 품질 혹은 경쟁력과 결합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계열회사에 일감을 맡기는 것이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기획·생산·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연관성이 높은 계열사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단일 상품거래가 아닌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거래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효율성 증대효과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주된 사업 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해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회사에 전담시키고 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사업부가 분사되어 계열사가 된 것이므로 효율성 증대효과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인적, 물적으로 협업 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호거래 시 종합적인 시너지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거래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인력 보유, 대규모 또는 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 밀접한 연관성 또

는 계약 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해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 변경 시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거나 품질의 안전성 확보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열사와의 거래에 효율성 증대효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 전자적 자원관리시스템·공장·연구개발시설·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의 구축·운영, 핵심기술의 연구·개발·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보안기술 및 정보가 상품 또는 용역의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계열사와의 거래에 보안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거래과정에서 영업·판매·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상호 간의 핵심적인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있는 거래라 할 수 있습니다.

•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거래를 말합니다.
- 긴급성 사유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보안성 사유를 판단할 때보다 더욱 엄격하고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경기급변이나 금융위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단순한 정치·사회적 변동이나 천재지변이 아닌 단순한 자연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순히 긴급한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서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열사에 물량물아주기 시 사전 검토사항**

- 계열사와 거래할 때에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할 경우 수의계약의 사유가 적정한지 검토해야 합니다(수의계약의 필요성).
- 수의계약은 보안성, 긴급성, 효율성이 있어야 합니다.
- 시장가격(정상가격)에 따라 거래하되 시장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적정가격에 따라야 합니다.
※ 정상가격이란 당사가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의 가격을 말합니다.
※ 적정가격 산정 시 내부와 외부 거래 시의 이익률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합니다.
- 상품·용역 거래가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점(장점)이 계열사에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면 부당내부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절감 효과가 계열사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 본 거래물량만으로도 계열사의 사업활동에 충분한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계열사의 사업 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
- 본 거래물량만으로 계열사에 유동성이 확보되는지 여부
- 계열사에 거래조건의 특혜가 제공되는지 여부
-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공여는 ‘통상적이고 적합한 거래상대방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할 경우 정상가격 거래도 문제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 **내부거래 심의절차 및 기준 마련**

• **수의계약 관련 절차적 합리성 확보**

- 수의계약은 거래상대방 선정을 위한 통상적인 계약방식으로서 공정거래법에서 계열사 간 수의계약 체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단, 경쟁입찰 거래가 가능하거나 통상적인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열사 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체결 사실은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특히, 지원의도)의 유력한 정황사실로 이해될 수 있고, 공정위의 위법 요건 입증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이 비계열사와의 거래 차단을 위한 배타적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적인 정황 증거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계열사에 통합 발주 시, 독립된 부서나 기관에서 실질적 업무 수행 여부 및 대가 적정성 점검**

- 실질적 업무는 중소기업 등 독립기업에 일괄 재위탁하고, 특별한 부가가치 창출 없이 거래단계만 추가해 과다한 이익을 수취하는지에 대해 독립된 부서 내지 기관에서 적정성을 감시해야 합니다(통행세 거래 금지).

•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자료보존 및 거래절차 점검 시 유의사항**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설치 및 구성 : 자율 설치하되 판단의 독립성 확보 가능한 위원 구성(3명 이상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는 2/3 이상으로 해 독립성 확보)

자료 보존 및 거래절차 점검

- 독립된 내부거래 심의기구 또는 내부거래 심의규정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해야만 내부거래 규제에 관한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계열사 간 협상 절차, 수의계약 발주기준 등에 관한 내부 규정 필요)
- 공정위가 주목하는 경쟁입찰 촉진 분야(건설, SI, 광고, 물류)와 관련해 계열사와 장기간 연속거래를 지속

하고 있다면 현 거래절차 및 내용에 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합니다.(특히 거래상대방 계열사의 동일인 일
가 지분이 높은 경우)

-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기타 내부지침으로 내부거래 관련 자료보존 범위와 기간, 방법 등을 매뉴얼화해 체계
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로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경우, 개정법에서 신설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공여 금지 규정이 적용되어 부당성에 대한 입증 없이 쉽게 제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6. 표시·광고 시 유의사항

>>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용역)과 관련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실을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합니다.

- 자기자신 또는 경쟁사업자 및 경쟁사업자의 상품·용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
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비교대
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다
른 사업자의 상품등과 비교해 우량 또는 유리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
의 상품 등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해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해
비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사례

국민카드(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의결 제2000-157호)

• 사실관계

피심인은 2000. 1. 9. 및 2.18. 자신이 발행하는 통신판매 카탈로그를 통하여 민속참숯옥 매트
의 구성성분인 ‘세라믹과 알미늄이 수맥을 방지’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 공정위 판단

수맥을 방지한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수맥파를 차단한다는 의미로 인정되고, 여기서 수맥파란 지
하수가 물길(수맥)을 흐르면서 양 접촉지면과 마찰하여 발생하는 에너지 파동을 일컫는 말로서 아
직까지 수맥파를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기구가 없고, 인체 유해성도 객관적으로 입증된 명확한
사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수맥파를 차단하는 물질, 차단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해서도 과학적
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심인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자신의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세라믹과 알미늄 등이 수맥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한 행위는 마치 자신의 제품이 수맥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 과장 광고행위로 판단하였다.

• 표시의 의의

- 사업자가 상품/용역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 및 내용물 포함),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 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합니다.

• 광고의 의의

-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인터넷 또는 PC통신, 포스터·간판·네온사인·에드벌론 또는 전광판, 비디오물, 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자기의 상품 외의 다른 상품,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을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거나 제시하는 것
- 사보, 홍보만화, 고객 안내문 등 대고객 홍보용 자료도 광고에 해당합니다.

• 위법성 판단기준

- 표시·광고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것(진실성)
- 소비자 오인성이 있을 것(소비자 오인성 : misleading)
-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공정거래 저해성)
-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 의사요건은 고려하지 않음
- 소비자 오인성이 없는 광고적 표현(puffing)은 부당한 광고로 보지 아니함
(예. PCS 광고에서 “소리가 보인다”)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허위/과장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만적인 표시·광고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를 말합니다.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사업자 등’)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과 비교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비방 표시·광고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해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해 비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광고의 실증

• 광고실증 의의

- 표시·광고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객관적인 실증 근거를 갖추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실증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 실증이란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실증 대상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TV, 라디오, 신문/잡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표시·광고되는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인 경우
 - 안전 또는 환경과 관련된 내용인 경우
 - 성능, 효능, 품질에 관한 내용인 경우
 - 기타 소비자의 구매선택 및 거래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 경우

• 실증 방법

-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방법은 학술적 또는 사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이어야 합니다.
- 시험 또는 조사는 법령에 의한 시험/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조사기관에서 이를 행해야 합니다.

• 실증자료의 제출

-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당해 사업자 등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 요청을 받은 사업자 등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실증자료 제출 시 실증 방법, 시험/조사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시험조사를 하는 경우에 한함) 실증내용 또는 결과 실증자료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면에 그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실증자료의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등에 관해 소비자가 잘못 아는 것을 방지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등이 제출한 실증자료를 비치해 이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해 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가 사업자 등의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해 그 공개가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실증자료를 열람·공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요약·정리해 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에 대해 표시·광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

업종	중요정보 항목	해당 항목
완구업	결함(하자) 등 피해 발생 시 보상기준	표시
	자율안전 확인신고 필	광고
의류업	제조년월 또는 제품 최초 착용년도	표시
자동차부품업	품질보증기간	표시
	환불(교환) 가능 여부 및 환불(교환) 기준 제품 사용으로 인한 위험 및 유의사항(연료절감장치에 한함)	
주방용품업	품질보증기간 환불(교환) 가능 여부 및 환불(교환) 기준	표시
귀금속(보석업)	세공불량 등 소비자피해(분쟁)에 대한 보상기준	표시
	가공국가명 및 가공지역명	표시+광고
	순도 및 보증기간	표시

렌탈서비스업	소유권 이전 조건(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함) 상품의 고장·훼손·분실 시 소비자 책임범위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 소유권 이전 시까지 소비자가 렌탈 계약상 지불해야 하는 렌탈료, 등록비, 설치비 등 모든 비용의 합계 [단, 정수기, 비데, 연수기, 공기청정기,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침대(매트리스 포함)에 한함] 소비자판매가격. 다만, 렌탈서비스 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단, 정수기, 비데, 연수기, 공기청정기,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침대(매트리스 포함)에 한함] -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표시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이 있는 경우 권장소비자가격 등 - 기타의 경우 렌탈 전용 제품이므로 소비자판매가격이 없다는 등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문구	표시+광고

표시·광고 시 체크포인트

- 가격 : 실제 판매가격을 낮춰 보이기 위해 허위의 가격과 비교하거나 부가세 등을 누락하지 않았는가?
- 특징 : '절대', '최고', '다시 없는' 등 실증되지 않은 용어를 표시하지 않았는가?
- 경쟁사 : 동일한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비교하지는 않았는가?
- 중상(비방) :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제품은 품질이 나쁘다고 비방하지 않았는가?
- 거래내용/조건 : 경품수량, 가액, 기간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지 않았는가?
- 기간 : 광고된 기간이 실제 기간과 다르게 광고되지 않았는가?
- 할인율 : 일부 상품을 할인하면서 대부분이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하지 않았는가?
- 원재료/성분 : 일부만 특수소재를 사용했음에도 전체 성분이 특수한 소재인 것처럼 광고하지는 않았는가?
- 품질/성능/효능 : 성능이나 품질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음에도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표시하지 않았는가?

표시·광고행위 시 유의사항(10계명)

- 객관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한 비교광고는 허용되므로 필요 시 동종의 상품에 대해 비교광고를 하되, 부분적인 우수성을 전체의 우수성으로 표현하는 행위 등은 지양할 것
- 사보, 홍보만화, 고객안내문 등 대고객 홍보용 자료도 광고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주의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표현을 수정할 것

- 인터넷, 사외유통망, 구내방송 등 사원끼리 유통되는 정보교환 등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 사소한 민원이라도 규제기관에 제소될 수 있으므로 민원에 대한 초기 대응에 유의할 것
- 홍보물이나 광고물 작성 시 문안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입각한 것인지, 평균 이하의 지적 수준을 지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오인할 우려가 없는지 생각할 것
- 광고적으로 기발한 표현이라도 경쟁사를 비방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지양할 것
- 표시나 표현을 확정하기 전에 항상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소비자의 입장이 되어 오인성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할 것
- 부당 표시·광고 사건은 우리 주위에서 항상 제기될 수 있으며, 사소한 부주의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Don't

>> **경품류 내용, 제공기간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 <예시>
- “선착순 100명에 한함” 또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등 경품 제공수량 또는 기간에 관한 구체적 제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특정 상품을 경품류로 제공한다고 표시·광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신청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경품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 유명회사 제품이 아닌 소형의 TV와 세탁기를 경품으로 지급하면서 표시·광고 시에 ‘경품 : TV, 세탁기’ 등으로 모호하게 표기해 마치 유명회사의 중형 이상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실제 거래가격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 **실제와는 달리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수량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시·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FAQ

Q
A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당한 표시·광고는 ① 허위·과장광고 ②기만적인 표시·광고 ③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④비방적인 표시·광고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Q
A 소비자 오인성은 표시·광고 부당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 하나로 알고 있는데, 부당한 광고로 판정되는 소비자 오인성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평균 이하의 소비자를 10% 이상 오인하게 할 경우 일단 부당 광고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외국의 예>
- 미국 : 일정한 상황하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소비자의 관점을 판단 기준으로 함
- 일본 : ‘오후 5시경(조금 부주의한 상태가 되어 있는)의 고교졸업 수준의 일반 가정주부(전문지식은 없으나 쇼핑 경험이 있는)’를 기준으로 오인성을 판단한 심결례 존재
- 이탈리아 : 무지식, 무경험인 자보다도 수준이 높은 합리적 소비자(reasonable consumer)를 기준으로 함
- 독일 : 대중의 10% 정도가 속을 경우 오인성이 있다고 판단

Q
A TV 또는 신문 등의 광고에서 사용되는 광고적 표현의 개념과 허용한계는 어떠한가?
광고적 표현이란 광고표현이 다소의 허위·과장성 등을 지니고 있더라도 그 자체로서는 소비자 오인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광고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이 없는 광고적 표현, 예를 들어 PCS광고에서 “소리가 보인다”, 사이다 광고에서 “가슴 속까지 시원한 사이다” 등은 부당한 광고로 보지 않습니다.

Q
A TV광고를 이용해 프로모션을 할 경우, TV광고에 꼭 표시해야 할 내용의 수준은?
TV광고는 그 특성상 시간적·공간적으로 제약이 있으므로 모든 정보사항을 표시하기는 어려우나, 소비자가 그 상품에 대한 선택 여부를 좌우할 정도의 중요정보는 반드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A 공인평가기관의 객관적인 서비스 수준 평가에서 당사의 최종 평가결과가 2위 경쟁사 대비 근소한 차이로 우수한 경우, 이를 근거로 서비스 수준이 국내 1위임을 광고하는 행위는 적법한가?
공인평가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해 순위를 발표했다면 이를 인용한 광고행위를 위법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평가결과를 왜곡해 과장해 표현할 경우 법에 저촉될 수도 있습니다.

Q 공인된 평가기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입증된 조사결과에 근거하고, 사실(조사결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해 당사의 경쟁우위 부분만(경쟁사의 경쟁열위 부분)을 비교하는 광고행위는 적법한가?

A 현행 비교광고지침상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부각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인 우수성을 근거로 전체가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킨다면 부당 광고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Q 특정 상품에 대한 프로모션을 신문광고 시 광고효과 극대화를 위해 핵심내용은 큰 글씨로 지면 중앙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에 작은 글씨로 표현하는 행위는 위법한가? 글씨 크기 관련 위법성에 대한 기준이 있는가?

A 하단에 표기한 작은 글씨가 상품 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데도 소비자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게 광고했다면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글씨 크기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최소한 광고 본문의 글씨 크기 정도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신문광고상 여러 가지 다른 내용(프로모션)을 같은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 제약된 지면으로 인해 프로모션 내용 중 당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선별해 표시하고 '자세한 내용은 www.xxxx.co.kr(관련 홈페이지)을 참조하세요'라고 광고하는 행위는 적법한가?

A 광고지면상 제약이 있으므로 모든 정보사항을 표시하기는 어려우나, 소비자가 그 상품에 대한 선택 여부를 좌우할 정도의 중요 정보는 반드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공인기관의 비교결과를 근거로 전체적인 우수성을 주장하는 광고를 하려고 할 경우, 전체 항목 중 우수한 결과만 나오는 비교항목이 몇 % 이상을 차지하면 정당하게 전체적인 우수성을 주장하는 광고로 볼 수 있는가? 비교항목 비중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조사의 특성 및 중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Q 공정위에서 신고되었거나, 심사 중인 광고에 대해 당사의 자체 검토 결과 일부 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광고내용 수정 또는 광고 중단 등 자발적으로 사전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 동 광고 관련 최종 심의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A 사업자가 부당한 광고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광고로 인한 소비자 오인성이 치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가벼운 조치(예 : 경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영리목적이 아닌 홍보용 기사를 사실보다 과장되게 신문 등 방송매체에 게재할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금지에 해당되나?

A 광고내용이 홍보 목적인 경우에도 광고행위자가 사업자이고 그 내용이 표시·광고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의 정의규정에 해당되는 한, 법 적용 대상으로 됩니다. 다만, 기자명의로 작성된 순수한 의미의 '기사'는 표시·광고법상 광고가 아니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7. 약관 관련 유의사항

>> 거래상대방 및 소비자(고객 등)와의 대량 거래 시 사용하는 약관 중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거래상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신의성실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제6조) : 사업자는 고객의 신뢰에 부응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주의를 기울여 고객 이익을 보호하고 약관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공정을 잃음'이란 사업자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 사이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을 말하며, 그 판단 기준은 사업자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을 비교형량해 정합니다.
-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른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이 해당합니다.

해당 사례

삼성카드(주)의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의결 제2006-074호)

· 사실관계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약관조항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

귀사가 본인 기타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취득한 다음의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거나 귀사가 영업 목적으로 사용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아래의 동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정보가 제공되거나 귀사가 금융상품 소개 등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본인이 동의한 목적에 제공·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1. 제휴카드 신청 시 해당카드 제휴기관에 다음의 정보를 제공·활용하는 경우

- 제휴 카드 및 제휴기관: 생략
- 제공·활용 목적: 제휴서비스 제공 및 각종 포인트 제공·정산
- 제공·활용 대상 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성별, 국적, 이메일주소 등)
 - 신용거래정보(카드번호, 거래일시, 사용금액, 사용처,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 등)
2. 귀사가 다양한 업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의 정보를 제공·활용하거나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그 외부업체가 당해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공·활용하는 경우
- 제공·활용 대상 신용정보 :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성별, 국적, 이메일주소 등)
 - 카드거래정보(카드번호, 거래일시, 사용금액, 사용처 등)
 -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고객의 소득, 재산, 주거, 직장정보 등
 - ※ 단, 고객의 소득, 재산 등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신용정보는 위탁업체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제공·활용 목적 :
 - 귀사 또는 제휴사의 상품·서비스 소개 및 판매
 - 귀사가 보험대리점 자격으로 행하는 보험상품 소개 및 판매, 보험·서비스 제공·손해보험사 생략·생명보험사 생략
 - 고객에 대한 사은행사 및 판촉행사, 카드이용 권유, SMS서비스 제공 등의 마케팅활동, 시장 조사 및 상품 개발·연구 등
 - 기타 아래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 ※ 우편물·이메일·카드 등 배송 업무, 회원 유지, 가맹점 모집 및 실사 업무, 전화상담 업무, 채권추심 업무, 유·무선 인터넷 관련 업무, SMS서비스 제공, 통신판매 업무, 전화권유판매 업무, 여행 업무, 차량등록 원부조회·발급 업무 등
 - ※ 본인이 신청한 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 제공
3. 귀사가 영위하는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업무 목적 범위 내에서 당해 가맹점에 제공·활용하는 경우
- 제공·활용 대상 신용정보 :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성별, 국적, 이메일 등)
 - 신용거래정보(카드번호, 거래일시, 사용금액, 사용처 등)
 - 제공·활용 목적 :
 - 가맹점과의 거래사실 확인 업무 및 매입이 불가능한 매출표 반송 업무
 - 가맹점과 회원의 신용카드 거래로 인한 분쟁해결과 관련한 업무

4. 범죄의 고소·고발 등의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제공·활용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요청에 의해 제공·활용하는 경우
- 제공·활용 대상 신용정보 :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성별, 국적, 이메일 등)
 - 신용거래정보(카드번호, 거래일시, 사용금액, 사용처 등)
 -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고객의 직장정보 등
5. 귀사가 가족카드의 설정·유지, 가족카드대금 청구 및 채권추심, SMS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회원에게 제공·활용하는 경우
- 제공·활용 대상 신용정보 :
 - 가족회원의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성별, 국적, 이메일 등)
 - 가족회원의 신용거래정보(카드번호, 거래일시, 사용금액, 사용처 등)
 -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가족회원의 직장정보 등
6. 해외 부정사용 방지 등의 목적으로 여신금융협회 등에 제공·활용하고, 여신 금융협회 등을 경유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하는 경우
- 제공·활용 대상 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등)
 - 제공받아 활용하는 정보 : 출·입국 정보

본인은 본 동의서 및 고객권리안내문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여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회원 (서명 또는 날인)
가족회원 (서명 또는 날인)

- **공정위 판단**

피심인이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카드의 이용 권유 및 보험상품의 마케팅 등 부가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신용구매서비스 및 현금서비스 제공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의 본질적인 측면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피심인이 제공하는 부수적인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신의 신용정보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BC카드(주)의 신용카드회원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의결 제2005-077호)

· 사실관계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약관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
약관변경 승인간주 조항 제24조(약관변경승인) ①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은행 또는 BC카드(주)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적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회원이 적용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정위 판단

“적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회원이 적용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객의 통상적인 우편물 수령기간, 카드사 간에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체결한 계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도록 약관을 변경하고서도 고객으로 하여금 계약의 존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계약존속 또는 계약해지 등을 선택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정한 부작위 등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동시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BC카드(주)의 가맹점약관상 불공정한 약관조항(의결 제97호)

· 사실관계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약관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
가. 약관조항 제13조(계약의 해지) BC카드사는 가맹점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이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의 불량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된 경우 등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 공정위 판단

계약의 해지는 계약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비록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의 존속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상당 기간을 두고 이행의 최고를 한 후에야 비로소 해지할 수 있음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위 약관조항은 해지사유로 규정한 각각의 사유가 계약관계에서 갖는 중요성을 불문하고 언제나 최고의 절차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약관조항으로 해지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도 계약 해지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그 사유는 자의적 기준에 의한 판단의 여지가 없도록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하고 내

용상 계약관계를 종료시키기에 적합한 중요성을 가져야 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위 약관조항이 규정한 해지 사유 중 제2호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는 그 의미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그에 대한 해당 여부의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해지사유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사소한 계약위반의 경우에도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제3호의 경우,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기관 간에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이 가능하고, 「신용카드업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상의 불량정보 등록기준에 의하면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전가한 가맹점, 카드를 위조·변조한 가맹점, 신용카드에 의하여 현금용통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가맹점 등을 불량거래자로 등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량정보가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외에 해지사유로 규정된 신용 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신용 상태의 악화라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그에 대한 판단을 피심인에게 위임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피심인의 자의적 해석과 판단에 따라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할부매매약정서상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의결 제2003-127호)

· 사실관계

피심인은 약관상 다음과 같은 조항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가. 부당한 기한이익 박탈조항 약관 제8조
‘병’과 ‘보증인’이 할부금을 1회 이상 연체하여 ‘갑’이 14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최고하였는데 납부하지 않거나 제7조 또는 제11조 4항의 경우 잔여 할부대금을 일시불 납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 제11조 4) ‘병’이 위 물품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양수인(양수인의 보증인 포함)이 할부매매계약의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양수인(양수인의 보증인 포함)이 신용보험 부적격의 사유로 할부매매계약의 승계가 불가한 경우, ‘갑’은 ‘병’의 잔여할부대금 전액에 대하여 ‘병’과 ‘보증인’에게 일시불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철회의 의사표시를 어렵게 하는 조항 약관 제9조
2) 청약의 철회는 위 기간 내에 병이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갑과 을에게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할부금 미납에 대한 보증인 통지생략 조항 약관 제13조
2) 병에 대한 할부금의 청구 및 미납에 따른 통지에 있어서 보증인에 대한 통지는 병에 대한 통
지로 갈음하기로 합니다.

Don't

>> 다음과 같은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
는 조항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 당사자가 합의해 결정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도
록 한 조항
- 계약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함에도 사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조항
- 계약의 해지는 해지절차에 따라 해지의 의사표시가 고객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함에도 사업자가 고
객에게 해지를 통지한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조항
-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임에도 재판의 승소/패소 여부나 패소비용을 불문하고 고객에게 소송비용
일체 또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비율로 부담하도록 한 조항

면책조항의 금지(법 제7조)

>> 면책조항이란 현재 또는 장래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자가 법규상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원인과 범위에
대해 유리한 법적 취급을 받을 것을 정한 약관조항을 말합니다.

- 법률상 책임이란 채무불이행 책임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상의 의무위반 책임, 불법행위 책임도 포함합니다.
- 일단 책임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범위를 법률의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축소시키는 약관조항
이나 법률상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약관을 설정한 의도 및 목적, 당해 업종에
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영업상의 필요 및 고객이 입을 불이익
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 위험의 분담은 채권의 목적이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급부 불능) 그로 인한 불

이익을 누구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계약의 취지에 더 합리적인가 하는 고려에 따릅니다.

Don't

>> 민법상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에도 귀
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여타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법 제8조)

>>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입니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 시 발생할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해 당사자들이 미리 정해놓는 것을 말합
니다. 실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실손해의 산정이나 입증에 복잡하고 당사자 간의 다툼의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이를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당사자들이 손해배상액을 약정하는 보다 중요한 목적은 채무의 불이행 시 고객의 배상액을 지불토록
약정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부당하게 과중한지’의 여부는 거래유형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
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 거래관행과 경제 상태 등 종합적
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Don't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권자의 실제 손해액이 예상배상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임에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외에 별도로 연체료까지 청구하거나 기납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약관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계약의 해제·해지(법 제9조)

>> 민법의 해제·해지 관련 규정(민법 제543조~제553조)을 무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해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해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 지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목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Don't

>> 계약 해제·해지 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최고 등의 절차를 거쳐 해제·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고객의 해제·해지 요구에 대해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 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에도 고객이 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제·해지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 고객의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사업자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최고 등의 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계약의 해제·해지 시에 고객이 원상회복 의무를 사업자보다 먼저 이행하도록 하는 조항
-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귀책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음에도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일부만을 환불하도록 하는 조항
-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 이미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이자 및 연체료를 제외하고 원금만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
- 계약이 해제·해지되어 사업자가 고객에게 대금을 반환함에 있어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을 붙이는 조항

채무의 이행(법 제10조)

>> 채무의 이행에 관해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Don't

>> 채무 이행에 대한 약관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 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타당한 제한사유를 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에게 자유재량권을 인정해 일방적인 급부변경권을 부여하는 조항
-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업자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하자 담보책임을 면탈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고객의 권익보호(법 제11조)

>> 고객의 권익에 관해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Don't

>>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 고객의 채무불이행 시 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손해배상액의 과다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은 고객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사업자의 민/형사상 조치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
-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기한의 이익을 박탈함이 타당함에도, 채무의 일부라도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조항
-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이어야 함에도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조항

의사표시의 의제(법 제12조)

>> 의사표시에 관해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 일정한 지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
-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해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
-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Don't

>>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해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 고객의 채무불이행 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물건을 회수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고객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 고객이 채무불이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손해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음에도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고객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유형/무형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조항
- 사업자가 의사표시에 관해 발신만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하거나 연착이나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도 통상 도착해야 하는 때에 고객에게 도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대리인의 책임가중(법 제13조)

>> 고객의 대리인에게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무효입니다.

Don't

>> 고객의 대리인에게 과중한 의무를 지게 하는 약관조항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 고객의 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 무효/취소로 되는 경우 대리인이 그에 대한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
- 고객이 약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리인이 그 이행을 책임진다는 조항

소 제기의 금지 등(법 제14조)

>>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소 제기의 금지조항이나 재판관할의 합의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입니다.

Don't

>> 고객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어떠한 사유로도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을 사업자의 소재지 법원 또는 사업자가 지정한 법원으로 정하는 조항

유의사항

>>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금지 시 ‘부당하게 과중한’의 판단기준

- 계약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경위, 배상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 경제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약관 변경은 계약 체결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약관 변경 시 고객은 동의를 거부하고 종전약관의 존속 또는 계약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아래 조항은 모두 무효입니다.

- 고객의 계약 위반이 계약의 존속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가 아님에도 채무불이행의 경우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매수인의 약정위반으로 계약 해제 시 매수인이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등 일체비용을 보상할 수 없음

- 매수인이 계약 위반 시 대금분할 납부의 기한 이익을 상실함. 채무 불이행 시 개인신용 정보를 정보기관과 관련업체에 임의 제공할 수 있음
-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약관의 조항을 개정할 수 있고, 고객이 개정통지를 받은 후 약관 개정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함

FAQ

- Q

A

약관 변경 시 기존약관 대비 고객에게 불리하다면 모두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되는가?

기존 약관 대비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이 모두 불공정한 약관은 아닙니다. 변경된 약관이 ‘공정성을 잃은’, 즉 사업자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 사이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면 불공정약관에 해당될 소지가 큼니다.
- Q

A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으로 약관법상 무효로 판명이 나게 되면, 이에 대한 회사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or 회사에는 어떠한 임팩트가 있게 되는가?)

과징금, 벌금 등 처벌조항은 없지만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언론 등에 발표되어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사업(약관)이 약관법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Q

A

약관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무엇이며 손해배상 등 피해자의 직접 구제는 가능한가?

사업자가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①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②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일반공중에게 물품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의 긴급성 신속성으로 인해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④사업자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가 현저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⑤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 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그로 인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⑥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해 다수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 수정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명령에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권고에 불응한 경우에는 특별한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아울러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피해를 본 고객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직접 구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Q

A

약관조항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청구(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며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심사청구서에는 ①심사청구자의 성명 및 주소, ②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③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고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심사청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심사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적인 사건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Q

A

계약에 대한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고 정해놓은 약관조항은 정당한가?

약관법 제14조에 따르면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소 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절차에 관한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보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1998. 6. 29. 98마 863)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8. 온라인 거래 관련 유의사항

>> 통신판매(전기통신, 우편, 광고물 등 비대면의 방법)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전자상거래(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방법으로 하는 상행위)를 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사례

하프플라자의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 (의결 제2003-068호)

- 사실관계
 - 피심인은 2002.11~2003.1월에 걸쳐 수차례 신문, TV, 인터넷 홈페이지인 하프플라자상에서 홈페이지 개설(2002.8.15) 이후,
 - 시중가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고 하프를 판매가격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지 않고 비교하여 실제로는 할인율이 50%에 미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마치 할인율이 50%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할인율을 표시·광고하였으며
 - 판매가격 외에 부가가치세, 배송료 등 추가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마치 추가비용이 없거나 추가비용은 판매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고
 - 하프물상의 판매수량에 제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매수량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마치 수량 등에 제한이 없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끔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 피심인은 2002.11.8 소비자에게 PS(Play Station)2를 219,340원에 판매하는 등 10여 종의 물품을 판매하면서 2주 배송 등을 명시하였으나 2002.12월 초까지 해당 물품에 대한 발주를 하지 않는 등 2002.11.8~12.11 기간 중에 다수의 소비자의 주문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2주 이내에 물품 발주를 하지 않는 등 공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를 취하지 않아 물품공급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고
 - 피심인은 2002.11.8~2003.1.14까지 다수의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영업일 이상 장기간 대금환불을 지연한 사실이 있으며, 물품구매를 위해서 필수적인 아이템에

대해서도 약관상의 환불불가조항을 이유로 환불 자체를 거부하고

- 피심인은 배송지연, 환불지연 등에 따른 소비자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 기간 방치하여 상담원과의 전화통화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다.

>>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의 의무사항

- **영업 전 신고의무 (제12조 제1항)**
 -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도메인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을 공정위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영업 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제24조)**
 - 선불식 통신판매 사업자의 경우 에스프로, 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계약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 **청약유인단계에서의 자기신원정보 표시**
 -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주소,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을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하고(제10조 제1항), 광고 시 상호, 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포함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을 표시해야 합니다(제13조 제1항).
- **청약유인단계에서의 표시·광고의 기록보존 의무이행 (제6조)**
 -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6월),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 기간 보존해야 합니다.
- **청약단계에서의 재화 등에 대한 사항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 (제13조 제2항)**
 - 재화 등의 명칭, 종류, 내용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 고지해야 합니다.
- **청약단계에서의 청약 확인 및 조작실수 방지 절차 마련 (제7조, 제14조)**
 - 거래대금의 부과시점 또는 계약 체결 전에 청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구비해야 합니다.
- **청약단계에서의 재화 등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 지체 없이 통지 (제15조 제2항)**
 -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함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청약단계에서의 계약서의 송부 (제13조 제2항)**
 - 소비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교부해야 합니다.
- **재화의 공급단계에서의 기간 내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 (제15조 제1항)**
 - 청약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 **재화의 공급단계에서의 공급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제15조 제3항)**
- **재화의 공급단계에서의 전자적 대금 지급 사실에 대한 통지 및 자료열람(제8조 제3항)**

Don't

>> 온라인 거래 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 기간 방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 등의 대금만을 청구하는 행위
-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다만, 재화 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 대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용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 등은 제외)

FAQ

Q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A 소비자의 단순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에 의해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이를 부담해야 하나,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10항에 의해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Q 소비자에게 특정 전자우편주소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수집한 전자우편주소로 요금을 청구하고 대금 미납 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는가?

A 사업자가 소비자와 사전에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약정해 지정된 주소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대금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Q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개인정보가 거래기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러한 개인정보도 삭제해야 하는가?

A 사업자가 보존해야 할 거래의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법 제6조 제2항에 의해 보존이 가능합니다.



9. 제조위탁(하도급거래) 관련 유의사항

>>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해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하도급법 제2조 제1항 참조)

• 제조위탁이란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의 규격·품질·성능(性能)·형상(形狀)·디자인·브랜드 등을 지정해 제조(가공을 포함한다)를 의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통신판매 카탈로그 제작 및 기프트 카드 등이 제조위탁에 해당합니다.

• 용역위탁이란

-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식·정보성과물이란 정보 프로그램(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 영화, 방송 프로그램, 그 밖의 영상·음성 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는 성과물,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의 결합에 의해 구성되는 성과물 등을 말합니다.

• 법적용 대상 사업자



• 법적용 대상 기간

- 하도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건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고사건의 경우 3년 이내에 신고된 사건은 3년

이 경과해도 조사가 가능합니다(법 제23조).

- 여기서의 ‘거래종료일’이란, 제조위탁·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의미합니다.
-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합니다.

•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의무(법 제3조)

- 양자 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계약내용이 불분명함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 사후분쟁 예방 필요성 때문에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 서면 미교부의 정당화 사유는 원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23303판결)

• ‘서면’이 되기 위한 법정 기재사항

- 위탁의 위탁일, 위탁받은 것의 내용(목적물이라 함)
- 목적물 인도 시기 및 장소
- 검사의 방법 및 시기
- 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용역위탁 후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과 방법 및 절차
- 또한 형식상 쌍방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전자문서, 공인전자서명도 가능).

• 서면 교부(발급) 시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 발급해야 합니다. 즉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해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 등의 서면을 교부해야 함이 원칙이나 늦어도 수급 사업자가 제조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 교부대상 서면

- 기본계약서(추가, 변경계약서 포함)(법 제3조)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법 제3조 제6항)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법 제11조)
-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법 제8조)

- 검사결과 통지서(법 제9조)
- 계약변경내역 통지서(법 제16조)

• 보존대상 서류

- 법 제3조 제1항의 서면
-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목적물 수령증명서
- 법 제9조에 따른 목적물 등의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
- 법 제6조에 따른 선급금 및 지연이자, 법 제13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음할인료, 수수료 및 지연이자, 법 제15조에 따른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 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에는 제7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 법 제12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7조의3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
- 법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현장 설명서 및 설계설명서는 건설위탁의 경우에만 해당).

Don't

>> 하도급거래 진행 시에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된 서면을 교부한 경우(불완전한 서면교부)
- 계약서면은 하도급 계약 시에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소한 제조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해야 하며, 공사나 제조에 착수한 후에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 추가 역무공급위탁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추가계약서 등을 미교부하는 경우
- 추가 역무공급위탁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정산에 다름이 있어 변경계약서나 정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하도급 계약서면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므로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서면미교부)
- 계약서면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반영해야 하므로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상이한 서면을 교부한 경우(허위 서면교부)

부당한 하도급결정 금지(법 제4조)

-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할 때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함)을 제조 및 용역 수행해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 등’이라 함)하고 수령할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함)를 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나 용역위탁을 받도록 강요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계속적 거래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중(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기간 자동연장의 경우를 포함)에 이미 발주한 수량과 상관없는 새로운 수량을 발주하면서 단가를 변경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이미 발주한 수량에 대해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봅니다.
- 부당하게의 판단은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관련해 그 내용, 수단·방법 및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타당한지 여부, 즉 하도급대금의 결정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내용, 규격, 품질, 수량, 용도, 공법, 대금결제조건 등 가격결정에 필요한 자료·정보·시간 등을 성실하게 제공했는지 여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했는지 여부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제약했는지 여부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옳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Don't

>>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서는 안 됩니다.

- 원사업자가 낮은 단가에 의해 제조 및 용역위탁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납품단가 후려치기)
-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제조 및 용역위탁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협조요청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안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해 결정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 경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부당한 발주·위탁취소 금지(법 제8조)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 임의 취소, 변경이 금지됩니다.

- 원사업자가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인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 위탁취소의 사유가 해당 하도급거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위탁취소가 위 계약서에 따른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때 실질적인 협의 여부는 위탁취소의 사유 등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협의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사회통념상 옳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단·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 및 협의과정이 충분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하였는지 여부

>>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취소나 위탁취소가 부당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부당성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예컨대 발주서대로 제조되지 않았거나, 납기를 현저히 초과했거나, 납품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등의 제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판단합니다.

Don't

>>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발주나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는 부당한 발주·위탁취소에 해당하므로 해서는 안 됩니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감액 등의 요구를 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계속 작업을 하도록 한 후 목적물 등이 위탁내용과 다르다고 해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동의·합의를 강요하는 방법 등으로 수급사업자의 형식적인 동의·합의를 받아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볼 때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곤란한 사유를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계약조건으로 명시하고 이들 계약조건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목적물 등의 하자 발생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법 제9조)

>>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 검사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제조업의 경우 대량 납품할 때, 샘플검사를 하거나 무검사 인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납품받은 후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의 위험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다만, 계약서에 반품에 관한 사항(반품사유, 시기, 보상문제 등)이 명백히 밝혀져 있고, 반품사유가 수급사업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부당반품의 금지(법 제10조)

>> ‘부당반품’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에 상관없이 수령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보내는 행위를 총칭합니다.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해서는 아니됩니다.

- 부당반품의 위법성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을 반품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반품의 경위, 반품한 목적물 등의 범위, 계약 이행내용과 위탁할 때의 반품조건, 검사방법, 반품에 따른 손실의 분담, 목적물 등의 수령부터 반품까지의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이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과 다르거나 목적물 등에 하자 등이 있고 이로 인해 계약목적물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당감액금지(법 제11조)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이 발주 시에 결정한 하도급대금을 발주 후에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찬금 등의 징수,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 명목과 방법, 금액에 관계없이 감액하는 일체의 감액행위는 금지됩니다.

>> ‘하도급대금의 감액’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감액은 명목이나 방법, 시점,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판단합니다. 즉 감액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성을 입증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감액의 ‘정당성’ 여부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 이행의 내용,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 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등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합니다.

-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 (3) 감액 금액
- (4) 공제 등 감액방법
- (5) 기타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Don’t

>> 원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해서는 안 됩니다.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 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경제 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감액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 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 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법 제11조 제2항 제7호)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법 제13조)

>> 발주한 물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 등의 검사기간 등에 불구하고 납품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지연이 됩니다.

>> 자사의 사무처리 지연과 수급사업자로부터의 청구서의 지연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 : 원사업자에게 있어서는 사전에 수급사업자가 청구액을 집계해 통지하는 데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급사업자로부터의 청구가 지연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청구하도록 감독하는 등의 대응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한편,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 지급기일이 되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을 지급기일로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금지(법 제19조, 제20조)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신고하거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또는 분쟁조정신청)한 것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법 제19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조합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해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우회적인 방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법 제20조).

위반 시 제재사항

>> 보복조치에 대한 벌칙 강화(법 제30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신고나 납품단가 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의 고발요청권(법 제32조)

•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발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책임(법 제35조)

• 기존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탈취해 유용한 경우에 적용하였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원사업자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부당감액, 기술자료 제공 강요 보복조치 등의 행위를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과징금 부과

•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크게 저해된 경우, 큰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위반행위의 수가 많거나 과거 법 위반 전력이 많아 향후 법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는 ①법 위반행위 유형, ②피해 수급사

업자의 비율, ③수급사업자의 경영 악화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 3가지 요소에 따라 1점부터 3점까지의 점수가 부여되도록 하고, 그 부여된 점수를 합산한 총점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징금의 기본산정기준은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해 도출합니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	2.2 이상	60% 이상 80% 이하
중대	1.4 이상 2.2 미만	40% 이상 60% 미만
중대성 약함	1.4 미만	20% 이상 40% 미만

• 기술자료 유출 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금액의 비율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정액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합니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 금액
매우 중대	6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대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중대성 약함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과징금 가중사유 및 비율

가중사유	요건
법 위반 전력이 많은 경우	3년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20%)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10%)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가 50개 이상 70개 미만(10%)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가 70개 이상(20%)
보복조치	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20%)

>> 벌점 부과

- 법 위반 유형에 대해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해 정하게 됩니다.

경고(서면 실태조사)	경고(신고 및 직권인지)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0.25점	0.5점	1.0점	2.0점	2.5점	3.0점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법 제4조 및 제11조), 기술 유출·유용행위(법 제12조의 3 제3항), 보복행위(법 제19조)에 대한 고발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은 5.1점으로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5점 초과)됨

• 투스트라이크 아웃제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법 제4조 및 제11조), 기술 유출·유용행위(법 제12조의 3 제3항), 보복행위(법 제19조)로 인한 과징금 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은 2.6점으로 3년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을 시 공공 입찰 참여가 제한(5점 초과)됨

>>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법 제25조의4)

- 공표 대상 : 과거 3년간 3회 이상 시정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하도급 벌점(누산점수)이 4점을 초과하는 원 사업자
- 공표 방법 : 매년 선정 후 관보 또는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1년간)

하도급 위반 예방 가이드라인

>> 납품조정에 대한 성실한 대응자세 견지

-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납품단가 조정사유 발생 시 수급사업자의 단가조정 요청이 있으면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계약 이후 발생한 사정에 따라 원·수급 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서면 미교부행위로 인정되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하도급법상 견적서 접수 및 수정 시 주의사항

- 협력회사의 사용양식(제출양식) 그대로 사용할 것

- 가격에 변화가 있다고 해서 제출된 견적서에 사선을 긋고 도장을 찍은 후 신규 단가를 기입하지 말 것. 신규 단가를 부득이하게 기입 시 해당 업체의 협상 담당자가 직접 기입하게 할 것
- 협력회사의 명판 및 날인이 없는 경우는 반드시 수령을 거부할 것
- 단가 협상 결과, 품의 예정된 금액과 현저한 차이를 보일 경우 ‘단가합의서’를 작성하는 이외에 별도로 신규 견적서를 작성해올 것을 요구할 것
- ‘원가절감 몇 % 달성’, ‘CD 계획’, ‘이전 가격과의 비교표’ 등 퍼센트 인하를 암시하는 그 어떠한 단어도 표기하지 말고, 품의서 작성 담당자의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를 붙여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것

>> 가단가 유의점

- 가단가(仮單價)를 기재한 경우에 정식단가가 기재된 것이 아니므로 ‘단가가 결정되지 못한 사유’와 ‘단가를 결정할 예정기일’을 기재해 단가가 결정된 후에는 바로 보충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 단가 변경 시 소급적용 유의점

- 단가의 인하에 대해 합의한 날(합의일)과 신단가의 적용을 개시하기로 한 날(단가 개정일)이 다른 경우에는, 합의했다고 해서 단가변경일보다 이전의 발주에 대해 신단가를 적용하면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해당. 또한 합의일부터 신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가 제출되었을 뿐일 때에는 합의한 것으로 되지 않고, 단가 개정에 관해 서로가 합의한 날이 합의일이 됩니다.
- 나아가 0월 납품분부터 신단가를 적용하려는 교섭은, 교섭이 장기간 결림에 의해 소급적용으로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0월 발주분부터로 해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 유상운송 및 재대여 금지 관련 유의사항

>> 유상운송 및 재대여란

- 유상운송이란 대가나 요금을 받고 대여차량을 이용해 운송하는 행위, 재대여란 대여차량을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공통점	차이점
• 모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으로 법인/대표자까지 처벌 대상 • 모두 보험 보상이 불가능	• 유상운송은 임차인(추가 운전자 포함)이 직접 운행, 재대여는 임차인(추가 운전자 포함)이 아닌 제3자가 운행 • 재대여는 대가를 받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다시 대여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

FAQ

- Q

A

계약한 차량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운송에 대해 별도로 요금을 받지 않아도 유상운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형식상 고객에 대한 무상으로 차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서비스 비용이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운송비 상당액이 반영(전가)되므로 실질적으로 유상운송에 해당합니다.
- Q

A

세탁소, A/S 센터, 마트, 치킨집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대여차량으로 자기의 세탁물, A/S 완료 제품, 배달상품 등을 고객에게 배송해주고 운송 실비를 상품/서비스 대금에 포함시켜 받은 경우에도 유상운송인가요?

아닙니다. ‘여객(사람)’이 아니라 ‘화물’만 운송하는 것이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약관 면책사항에는 해당해 보험사가 보상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별도의 운송 특약 가입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Q

A

임차인이 대여차량으로 타인의 화물을 배송해주고 운송 요금을 받으면 유상운송인가요?

아닙니다. ‘여객(사람)’이 아니라 ‘화물’만 운송하는 것이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약관 면책사항에는 해당해 보험사가 보상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자기의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비해 보험 보상 거부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운송 특약 가입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 화물이 아닌 위험물을 수송하는 경우, 화물 수송 목적으로 대여차량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화물 적재로 인해 차량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서는 자동차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등 개별 법령 위반 이슈도 발생하며, 임대차계약상 금지행위에도 해당합니다.

- Q

A

유상운송이나 재대여를 한 임차인만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유상운송이나 재대여 목적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대여한 경우 유상운송이나 재대여가 가능하도록 도운 것이므로, 담당자도 방조나 알선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상운송/재대여 방조나 알선의 경우 담당자는 물론 양벌규정에 의해 경우에 따라 법인/대표자에 대한 처벌도 가능합니다.

- Q

A

담당자가 고객으로부터 유상운송/재대여를 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만 받으면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확약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완전히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차량 사용 목적, 차량 보유 및 운행 현황 등을 확인하고, 고객에게 금지사항과 위반 시 불이익에 대해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하는 등 계약 체결과정에서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확약서를 받는다면, 유상운송/재대여를 예방할 수 있고, 설령 유상운송/재대여가 발생하더라도 관계자 및 당사의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Q

A

고객의 업종상 유상운송/재대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할 수 없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고객이 렌터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또한 고객이 설명한 차량 운행 형태가 유상운송/재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그 외 유의업종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차량 사용 목적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사가 여행사 직원의 업무 출장 등에 사용한다면서 승합차 장기 렌탈을 신청한 경우, 직원이 몇 명인지, 현재 보유 또는 이용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이 몇 대인지, 여행사 규모에 비해 업무용 차량이 적정 수준으로 판단되는지, 차량 추가의 경우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해 직원 수/업무량 등이 증가한 사정이 있는지, 여행자/관광객 등을 운송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전세버스회사 등과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확인이 불가 또는 부실하거나, 확인과정에서 고객의 유상운송/재대여가 의심되거나 유상운송/재대여 목적을 알게 되었다면, 계약이 불가합니다.
확인 후에도 고객의 업무용 차량으로 판단된다면, 고객에게 대여차량을 유상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약관조항(장기 약관 제8조 제1항 제3호, 월간 단기 약관 제9조 제1항 제3호의 금지행위)을 설

명하고, 고객으로부터 약속서를 받아 업무용 차량으로 판단한 근거 자료와 함께 스캔 및 보관하며, 이메일/녹음 등 객관적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Q
A 유상운송/재대여 여부는 계약 체결 시에만 확인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계약 체결 후에도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행거리, 사고/수리 건 발생빈도 등에서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된다면, 임차인에게 연락해 차량 운행 현황을 확인하면서 유상운송/재대여가 금지되는 점을 다시 한번 안내 및 당부하고, 이메일/녹음 등 객관적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Q
A 유상운송/재대여 여부는 신규 계약 건에서만 확인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기존 계약이 별다른 문제 없이 유지되고 있더라도, 재계약, 추가 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A 계약 실행 후 유상운송/재대여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유상운송/재대여가 확정되었거나 임차인이 자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의심만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는 임차인에게 연락해 차량 운행 현황을 확인하면서 유상운송/재대여가 금지되는 점을 다시 한번 안내 및 당부하고, 이메일/녹음 등 객관적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Q
A 고객이 대여차량으로 유상운송/재대여를 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없다면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유상운송/재대여 목적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고객도 기록을 남길 수 있으며, 실제 분쟁 사례에서도 담당자가 유상운송/재대여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Q
A 임차인이 대여차량으로 유상운송이나 재대여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일단 당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계약으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임차인의 유상운송/재대여 목적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담당자 및/또는 상위 직책자에 대해 구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벌운영지침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자 및/또는 상위 직책자에게 최대 해임까지 징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담당자 및/또는 상위 직책자도 유상운송/재대여 예상 가능성이나 개입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단순히 도와준(방조한) 것으로 판단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적극 가담했거나 유상운송/재대여를 하도록 한(교사한) 것으로 판단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회사/대표자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담당자 및/또는 상위 직책자와 동일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재대여를 한 임차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경우 더 문제가 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은 등록이 필요한 사업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여객운수사업법 제34조 제1항 위반 외에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한 것(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어 경합해 가중 처벌됩니다.

Q
A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외에 다른 리스크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인데, 자동차보험약관은 면책사항으로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여차량 운행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면 보험사가 보상을 거부할 수 있으며, 결국 임대인인 당사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의료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개별 법령 위반 이슈도 발생합니다. 만약 고객의 유상운송/재대여 목적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Q
A 택시와 카풀의 대타협 합의에 따라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카풀이 허용된다고 하는데, 임차인이 대여차량으로 위 출퇴근시간에 카풀을 해도 괜찮나요?

아닙니다. 출퇴근시간에 카풀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1호로,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당사의 대여차량은 (대여)사업용 자동차이기 때문에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여차량으로 카풀을 하는 경우, 임차인은 금지되는 유상운송을, 카풀 플랫폼 사업자(예.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지되는 유상운송 알선을 한 것이어서 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FAQ(유상운송/재대여 유의업종)

Q
A 계약자가 렌터카 사업을 하나요?

재대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Q
A 계약자가 차량 정비업을 하나요?

재대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하는 모든 차량의 차량 사용 목적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Q 계약자가 학원, 병원, 의원, 음식점, 요양원, 인력파견업, 숙박업, 여행업을 운영하나요?

- A

유상운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하는 차량이 승합차일 경우 차량 사용 목적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 Q

계약자가 대리운전, 유흥업을 운영하나요?
- A

유상운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하는 모든 차량의 차량 사용 목적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 Q

계약자가 확약서만 주면서 계약을 진행해달라고 하나요?
- A

차량 사용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IV. 행동지침 및 체크리스트



1. 행동지침
2.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크리스트



1. 행동지침

가. 정부의 지시 등에 따른 행정지도를 받을 시

- 이른바 규제산업(regulated industries)의 경우 전문규제기관이 일반적인 감독권한에 근거해 사업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하고 사업자로서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내용이 경쟁제한의 목적을 명백히 갖는 것으로 공정위가 인정하는 가격, 물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한편, 가급적 규제기관 담당자 없이 사업자들만이 참석하는 회의 개최나 사업자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삼갈 필요가 있습니다.
- 과점적이면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체성이 높거나 경쟁요소가 제한적인 시장의 경우 전문규제기관의 요청이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요율, 수량과 관련된 사업자 간의 직접적인 정보교환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공정위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보의 유통은 가급적 규제기관 담당자와 사업자 간의 일 대 일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경쟁사와의 합의 시

- 가격과 관련된 합의는 개별 사업자들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어 그 독자성, 자율성을 제한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비록 합의가 구체적 수준의 가격 설정을 그 내용으로 하지 않고 가격 결정의 방식이나 기준만을 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에 관한 정보라면 구체적인 가격표나 인상 폭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경쟁자로부터 취득하거나 경쟁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이유가 어떻든 가격 합의에 참가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합의 파기나 탈퇴 또는 합의 방식과 다른 독자적 가격 결정에 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쟁사 간의 의사연락 또는 접촉은 그 자체로 합의가 형성될 기회가 존재했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교환된 의사의 내용이 구체적인 가격 정보에 관한 것일 경우 합의를 직접 입증할 증거가 없더라도 합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격 이외에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경쟁요소로 볼 수 있다면 합의의 대상이 될 경우 경쟁제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업무상 경쟁사 간에 정보교환 채널을 갖고 있는 업종의 경우 정보가 교환되는 사업내용이 합리성이나 사회적 유용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위가 어떻든 경쟁제한적 합의에 참가했다라도 행위 종료를 인정받으려면 독자적인 가격 또는 생산량 결정 등 객관적으로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시적인 합의 파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시장을 통한 정보 수집과 같이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경쟁사의 가격 또는 생산량 정보를 입수하는 행위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크리스트

- **체크 목적**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당사 업무와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소지가 있는 사항을 점검
- **체크 방법** : 해당 업무 진행 시 자율점검 및 자가진단용
- **체크 관계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체크 요령** : 소속 부서의 업무와 관련해 체크리스트에 명시된 세부 위반사항에 대해 그 위반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함

○ - 점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X - 점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점검 항목에 해당유무가 불명확한 경우

※ 본 체크리스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적인 업무상 흔히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공통적인 사항만을 추출한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 법규의 위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점검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써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하도급법 - 협력업체 거래

(1) 협력업체 조사 및 참여 대상 협력사 선정단계

구분	분류	점검 항목	점검 결과
협력업체 선정	하도급	- 협력업체 선정 시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의 범위를 제대로 적용했는가? - 협력업체가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인가? - 위탁의 내용이 하도급법상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 협력업체 선정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가 이루어졌는가?	
	비하도급	- 협력업체 선정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가 이루어졌는가? - 의도적이거나 우발적으로 협력업체 선정 시 특정 업체를 누락했는가? - 계열사 또는 비계열사와 동일한 심사 기준을 적용했는가? - 경쟁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특정 거래상대방에게 당해 금융망에 의 접근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가 있었는가? -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는가? -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과 관련해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가? - 자기의 계열회사하고만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면서 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타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가 있었는가? - 부당한 거래 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는가? - 일반 거래자에 대해서는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면서, 계열회사 혹은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신용도에 차이가 없음에도 신용으로 대출하는 행위가 있었는가?	

(2) 입찰 공고 및 입찰단계

구분	분류	점검 항목	점검 결과
입찰 (지명, 경쟁, 지명경쟁입찰 포함)	하도급, 비하도급 공통	- 입찰 요청업체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되었는가? - 공지된 입찰조건에 따라 당사자가 선정되었는가? - 사전 예정가는 적절하게 결정되었는가? - 사전 예정가에 대해 참여 거래상대방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가? - 최초 제시된 낙찰조건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었는가? - 최저가 입찰 시 최저가 업체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가? - 유찰 기준은 사전에 고지되었는가? - 유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가? - 최저가 입찰 시 최저 낙찰자에게 우선협상자 지위를 부여하고 추후 협상을 진행했 는가?	
수익계약		- 수익계약 대상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낙찰자가 선정되었 는가? - 단가 결정 및 협력업체 선정 시 복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검토했는가? - 수익계약 시 시장의 정사가보다 단가 인하를 요구한 적이 있는가? - 경영상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단가를 감액했는가?	

(3) 계약 체결단계

구분	분류	점검 항목	점검 결과
서면 교부 및 보존	하도급, 비하도급 공통	- 위탁 이전에 서면이 교부되었는가? - 계약서에 하도법상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목적물, 납품 시기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대금 지급방법 및 기일,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요건 및 방법 절차 등) - 계약서 외 별도 항목의 내용을 추가할 경우 법무팀 내지는 컴플라이언스팀의 사전 검토를 받았는가? - 거래 시 발생한 문서는 3년 동안 보존되고 있는가?(단,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경우 보존해야 하는 서류들의 보존기한은 거래 종료 후 7년)	
	하도급	- 수급업체에서 하도급계약 확인서면을 요청한 경우, 해당 서면을 교부했는가? - 하도급대금을 감액했을 경우, 수급업체에게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을 교부했는가? - 수급업체에게 기술자료 제공 요청한 경우,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를 교부했는가? -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주어야 하는 서면에 기술 자료 사용기한, 기술자료 반환일 또는 폐기일, 반환 또는 폐기방법 등 하도급법상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서면 내용 검토	비하도급	- 거래상대방이 오히려 다른 거래처를 구할 만한 최고기간도 부여하지 않고 거래 를 거절해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규정이 존재하 는가? - 구매물량이나 거래기간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에게만 지불조건을 현 저히 유리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는가? -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 거래가격에 비해 높은 대가로 구입해 자기 또는 계 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가? - 거래상대방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가?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존재하 는가? - 재판관할법원을 일률적으로 자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규정한 조항이 존 재하는가? - 자기의 경쟁사업자와는 유사한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 는가? - 거래상대방과 새로 거래하는 조건으로 이미 거래하고 있는 자신의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 존재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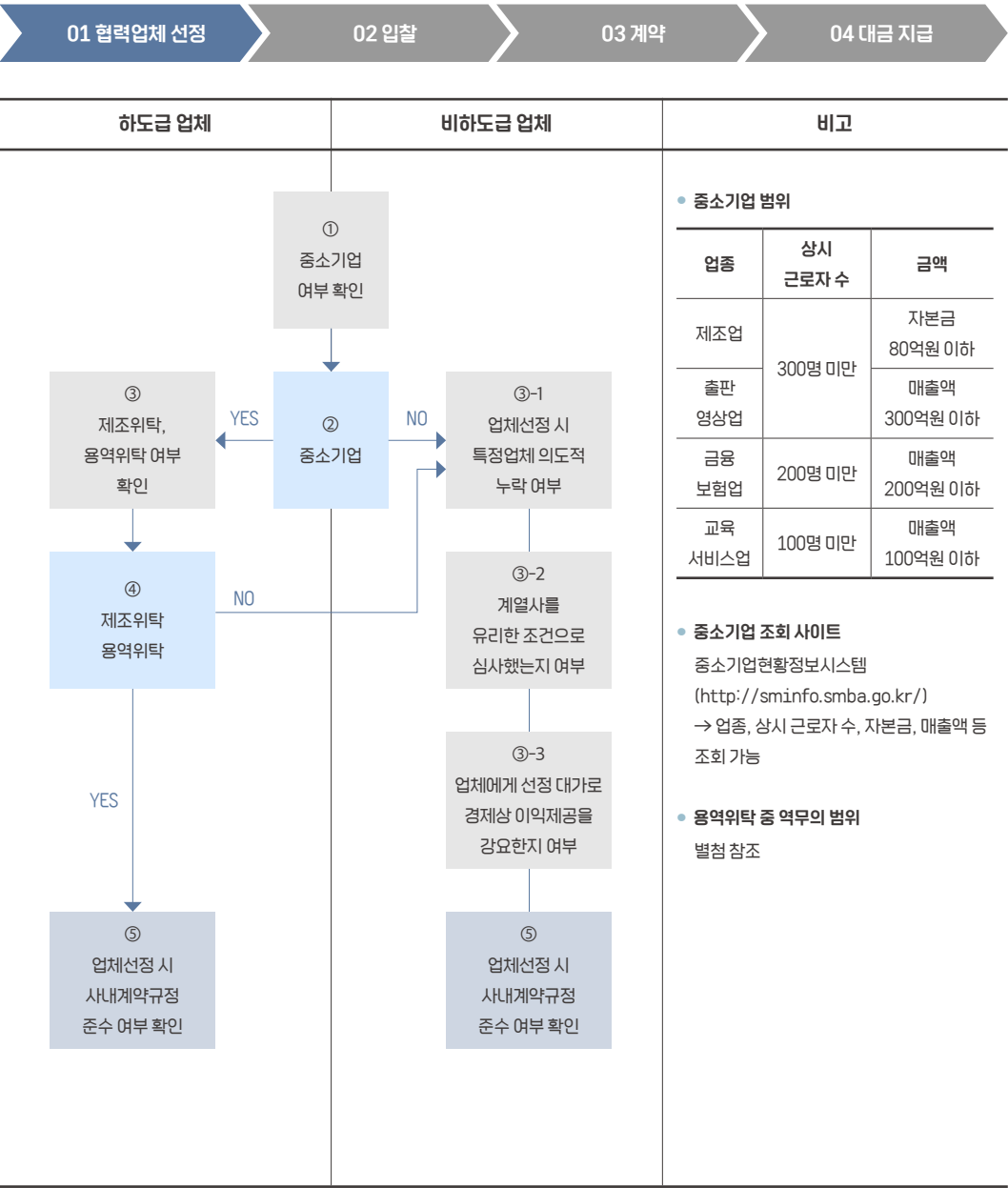
(4) 계약 이행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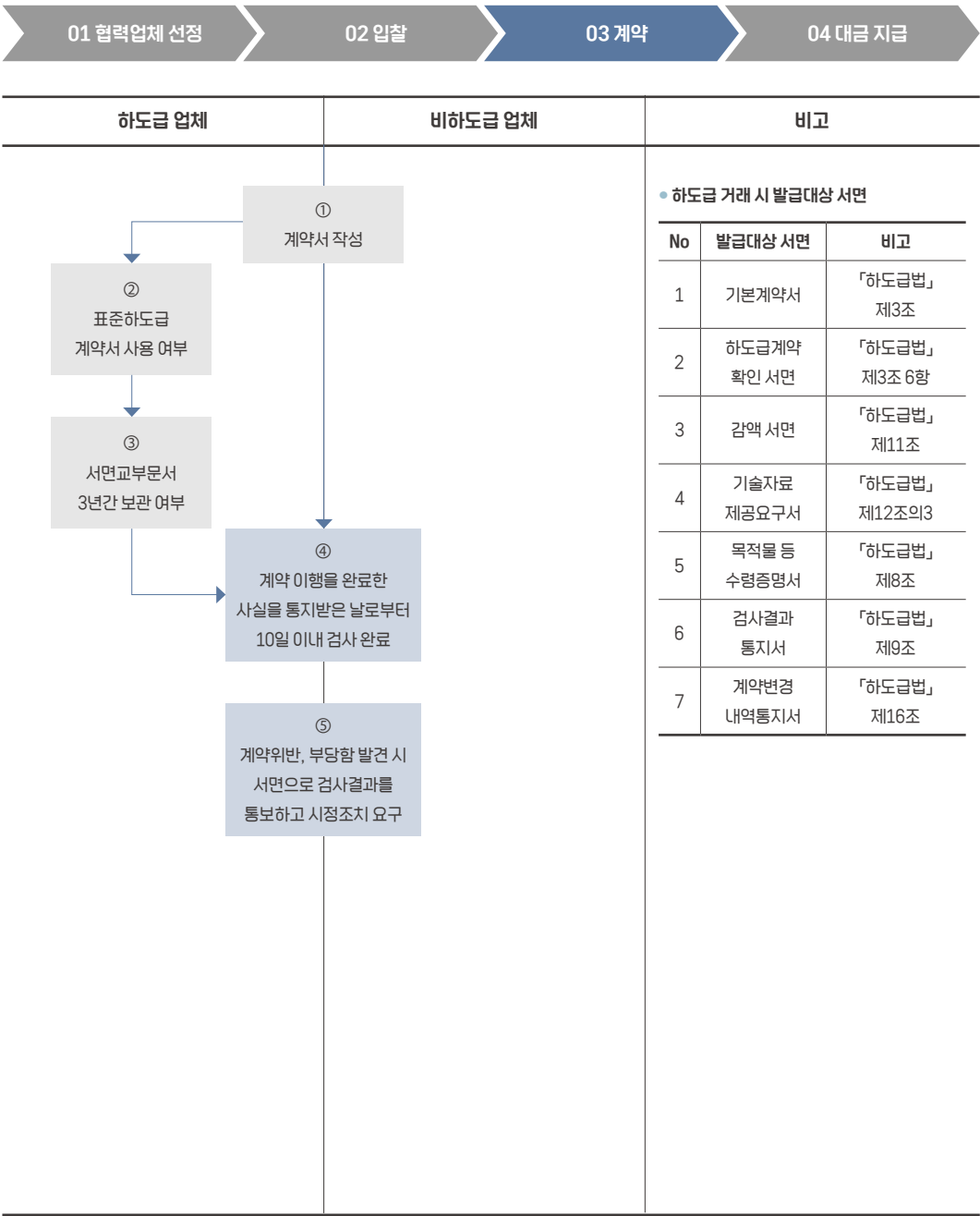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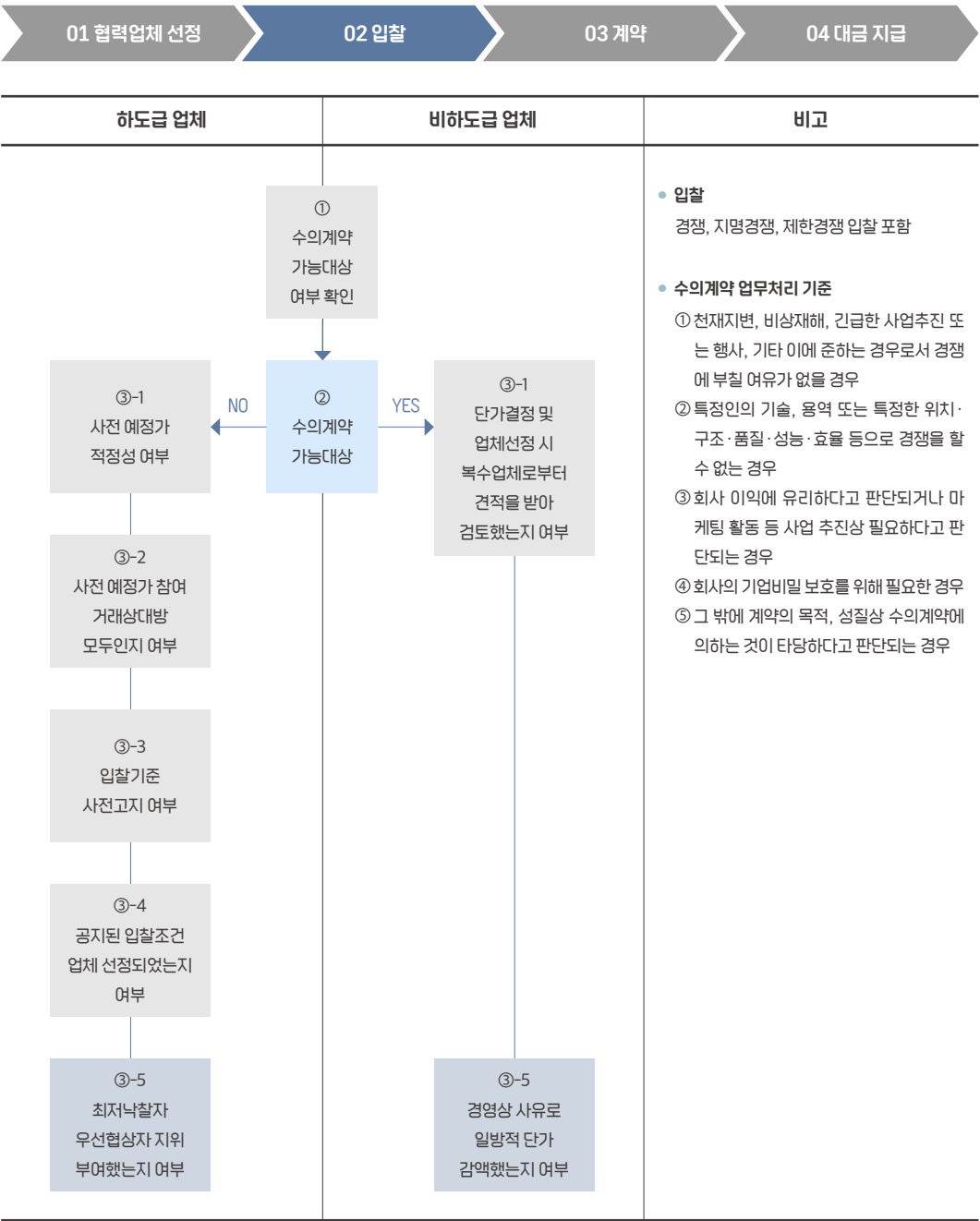
구분	분류	점검 항목	점검 결과
납품 및 검수	하도급, 비하도급	- 위탁물 수령 후 인수증을 교부했는가? - 검사는 사전에 합의된 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검사 통보는 위탁물 수령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되고 있는가? - 고객(발주자, 수요자)의 클레임, 판매 부진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량을 거부했는가?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수량을 거부하거나 발주를 취소한 적이 있는가? - 계열사 또는 특정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품질기준 및 검수기준을 달리 적용했는가?	
	공통		

(5) 대금 지급단계

구분	분류	점검 항목	점검 결과
대금 지급	하도급	- 납품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했는가? - 대금 지급기일 60일이 초과되는 경우, 초과된 일수에 대한 어음할인료(연 7.5%,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경우, 금융기관과 체결한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 또는 지연이자(연 15.5%)가 지급되고 있는가? - 사전에 합의된 대금 지급방식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었는가?(지급기일, 현금 또는 어음의 지급) - 일방적으로 대금을 물품이나 상계처리했는가?	
	비하도급	- 사전에 합의된 대금 지급방식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었는가?(지급기일, 현금 또는 어음의 지급) - 회사의 내부 대금 지급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 협력업체 선정 업무





01 협력업체 선정	02 입찰	03 계약	04 대금 지급
하도급 업체	비하도급 업체	비고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관련 법령이 허용한 범위 내 협력업체와 약정한 기한 내 대금 지급		
	대가 지급을 위한 전표처리 등의 회계처리를 구매요구부서, 발주부서 또는 인수부서에 위임 가능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시행 2015. 1. 1.][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16호, 2014. 12. 23., 일부개정]

I.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1.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물류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물류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가.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업, 물류시설 운영업, 물류 서비스업의 활동
- 나. 「항만운송 사업법」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 및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용역업·물품공급업·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 및 컨테이너수리업의 활동
2.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분양업무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3.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6호의2 규정에 의한 건축물(주거용, 비주거용, 사업시설을 포함한다)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가. 청소,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운반 등의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나.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 활동 (조경수 및 관목의 보호를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가.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 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보 프로그램(상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의 운영 및 유지·보수 활동을 포함한다] 등의 활동
- 나. 전산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또는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를 검색 또는 제공하는 등의 활동
5. 광고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가. 광고와 관련된 판촉, 행사, 조사, 컨설팅, (사진)촬영 등의 활동
- 나. 광고와 관련된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의 활동
- 다. 전시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등의 활동
6. 「공연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연 또는 공연의 기획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편집, 현상, 녹음, 촬영, 음향, 조명, 미술 등의 위탁을 하는 활동
7.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측량, 지질조사 및 탐사 등의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가. 「건축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설계
- 나. 「엔지니어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
- 다. 측량, 지질조사 및 탐사, 지도 제작
8. 이장에서 열거한 역무의 공급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위탁받은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II.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05-13호, 2005. 7. 6.> 이 고시는 200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50호, 2009. 8. 20.>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39호, 2012. 8. 20.>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6호, 2014. 12. 23.>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약관법 - 약관거래

구 분	점검 항목	점검 결과
명시 의무	개인고객이나 법인고객과의 계약 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약관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 으로 예상되는 방법(지점 비치나 홈페이지 게시, 직접 전달 등)으로 명시하는가?	
교부 의무	고객이 약관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기를 기피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가?	
설명 의무	고객을 유치하거나 지점을 내방한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때에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가?	
약관의 변경	약관 변경 사유 및 변경사항을 검토한 후 고객에게 약관 변경에 대해 고지하거나 안내하는가?	
개별약정 우선	고객과 약관의 내용과 다른 개별약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을 개별약정보다 우선해 해석하 고자 하는 행위를 하는가?	
약관의 해석	약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인데도 고객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행위가 있는가?	

서면작성 요구 약관조항	약관 중에는「이와 다른 개별약정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구두에 의한 합의는 모두 무효)」라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가?	
고객의 불이익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가?	
예상의 곤란성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거나, 경우에 따라서 고객이 계약의 거래행태 등 제반사정에 비 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가?	
본질적 권리의 제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가?	
면책조항의 금지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는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 시키는 조항이 있는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 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해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가?	
손해배상의 예정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 있는가?	
계약의 해제·해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또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가?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 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해,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 있는가?	
	계약의 해지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하거나 원상 회복 청구권을 부당 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가?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 있 는가?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 나 목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 가능하도록 정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 있는가?	

채무의 이행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는가? 예) 당초 계약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보증금액이 큰 쪽으로 증액되어 연대보증인의 추가적인 부담이나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인의 서명·날인 없이 변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고객의 권익보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가?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이 있는가?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가?	
의사표시의 의제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는가?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이 있는가?(단,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해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이 있는가?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이 있는가?	
의사표시의 의제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장기(長期)의 기한 또는 불확정 기한을 정하는 조항이 있는가?	
대리인의 책임 가중	고객의 대리인에게 법률상의 책임 이외의 의무를 가중시키는 조항이 있는가?	
소 제기의 금지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 있는가?	

표시·광고법		
구 분	점검 항목	점검 결과
허위·광고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를 하는가? 예) ①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사의 신용이 떨어진다고 표시·광고(허위) ②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근거로 재무상태 및 신용도도 입증되었다고 표시·광고(과장) ③ 명백히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제일’, ‘유일’ 등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허위)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시행령 제3조 제2항)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가? 예) ① 무료 서비스 등이 일정 기간에만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사용기간을 밝히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 ② 추천 등의 방법으로 한정인원에게만 경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자 전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③ 유명회사 제품이 아닌 소형의 TV와 세탁기를 경품으로 지급함에도 경품제공 사실을 표시·광고함에 있어 “경품 : TV, 세탁기” 등으로만 모호하게 표기해 마치 유명회사의 중형 이상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④ 통신판매 광고 시 어떤 제품의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표기했으나 상품구매 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상품우송료 3,000원을 포함해 13,000원인 경우 ⑤ 일부 상품 또는 일부 매장의 할인특매를 대부분의 상품 또는 대부분의 매장의 할인특매인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행위 ⑥ 가격인하판매를 실시하면서 비교가격의 기준과 인하 시점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거나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를 하는가?	
비방적인 표시·광고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해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 표시·광고해 비방하는 표시·광고를 하는가?	
중요정보 공개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에 대해 표기하는가?	

표시·광고법 -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광고

구 분	점검 항목	점검 결과
통신판매사업자 자신에 관한 사항	통신판매업자의 상호를 사실대로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약칭 또는 가명을 사용하거나, 자기의 상호보다 제조회사명 등을 강조 표현하는 방법으로 표시·광고해 통신판매업자가 누구인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가?	
	통신판매업자가 자기의 주소를 사실대로 표시하지 않고 사서함만을 표시하거나 행정구역, 지번, 빌딩명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모호하게 표시함으로써 자기의 사업장 소재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가?	
	통신판매업자가 전화번호에 대해 정상적인 영업시간 내에 통상적으로 소비자와 통화가 가능한 전화 번호를 사실대로 표시·광고하지 않고 정상적인 통화가 어려운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표시·광고를 하는가?	
상품의 내용 및 가격에 관한 사항	상품을 사진이나 화면으로 제시하는 경우 광고상에 표시된 상품의 크기가 실제 상품 크기와 다르거나 화면에 나타난 상품의 색상, 디자인 등이 차이가 있음에도 그 내용을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상품의 품질 등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표시·광고를 하는가? 예) 화면에 나타난 상품의 색상이나 디자인이 실제 상품과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거나 품질 등이 실제보다 좋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상품의 가격에 대해 실제 판매가격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의 일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거나 제조업자가 임의로 정한 권장(희망) 소비자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 표시·광고해 실제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를 하는가?	
	실제 판매가격 이외에 송료 등 추가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함에도 그 내용과 금액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거나 모호하게 표시함으로써 마치 추가비용이 없거나 추가비용은 판매업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하는가?	

거래조건 등에 관한 사항	상품인도에 소요되는 기간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최단 및 소요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모호하게 표시함으로써 실제보다 상품인도 소요시간을 짧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하는가? 예) ① 실제 상품인도 소요기간이 10일인데도 이를 표기하지 않거나 “7일 이내 전국 배달 가능”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② 상품인도 최단소요기간은 10일이고 최장소요 기간은 20일인 경우에 있어 단순히 “상품인도 소요기간 10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상품의 판매수량, 신청기간 등에 제한이 있는 경우 동 내용을 사실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표시함으로써 수량 또는 신청기간 등에 제한이 없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하는가?	
	사후 반품되지 않음에도 반품이 가능하다고 하거나 애매모호하게 표시·광고해 마치 환불을 보증해주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하는가?	
	청약철회와 관련된 광고를 하는 경우 청약철회 가능 여부, 그 기간과 절차 등에 관해 사실대로 표시·광고하지 않고, 그 내용을 모호하게 표시하거나 법규에서 정한 청약철회 행사권을 제한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가?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

구 분	점검 항목	점검 결과
소비자보호 조항	사업자가 소비자와 약정하지 않은 주소로 전자문서를 송부한 후 거래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를 하는가?	
	사업자에 의한 특정 전자서명 인증기관의 인증 사용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가?	
	분쟁 방지 등을 위해 거래기록을 보존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하는가?	
	소비자의 전자상거래에 있어 조작실수 방지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신고제도	통신판매업을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포함)·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를 신고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는가?	

통신판매의 표시·광고 기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면서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통신판매업 신고 번호 등을 표기하는가?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고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공급 서)을 교부하는가?	
기만행위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가?	
연락처 변경 및 폐지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를 하는가?	
분쟁 및 불만처리 인력 또는 설비 확보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 기간 방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 위를 하는가?	
대금청구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 는가?	
구매 강요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는가?	
소비자 정보의 이용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는가?	

부록



- ▶
- 1.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행위
 - 2.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지침 목록

1.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법 제19조 제1항)	가격 공동행위
	거래조건 공동행위
	거래제한 공동행위
	시장분할 공동행위
	설비제한 공동행위
	상품의 종류 및 규격제한 공동행위
	영업수행·관리 공동행위
	입찰담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3조의2)	거래 거절 : 공동의 거래 거절, 기타의 거래 거절
	차별적 취급 :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염매, 부당고가매입
	부당한 고객유인 :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기타
	거래강제 : 끼워팔기,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 간섭
	구속조건부거래 : 배타조건부거래, 거래 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사업활동 방해 : 기술의 부당 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부당한 지원행위 : 부당한 자금·자산·상품·인력 지원,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귀속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법 제29조 제1항)	최저가격 유지행위
	최고가격 유지행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법 제3조의2)	가격남용행위
	출고조절행위
	사업활동 방해행위
	진입제한행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및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제한 및 신고(법 제7조 및 제12조)

[기업결합의 유형 및 신고시기]

구 분	신고의무자	기업결합 수단	신고 시기
사전신고	대규모 회사	주식취득/ 최대출자자	원칙적으로 사전신고(주식취득의 계약·합의·이사회결정일로부터 주권교부일 등 주식취득의 효력 발생 시기까지) ※ 자본시장법상 경쟁매매는 사후신고 대상
		합 병	합병계약 체결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시기
		영업양수	영업양수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경과 또는 대금 지급일까지의 시기
		회사 신설	회사 신설에 대한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의결일부터 회사 설립등기일까지의 시기
사후신고	대규모 회사 이외의 자	주식취득/ 최대출자자	주권교부일, 주식대금 지급일 또는 주주권 이전일(주식양수)
			주식대금 납입기일 다음날(신주유상취득)
			지분양수 효력 발생일(지분양수)
			주식소유비율 증가 확정일(기타)로부터 각각 30일 이내
		합 병	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영업양수	영업양수대금 지급완료일(다만, 지급완료가 계약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90일)로부터 30일 이내
		회사 신설	배정주식의 주금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대규모 회사	임원 겸임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선임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행위 제한(법 제9조 내지 제14조의5)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행위 제한]

구 분	규제내용
상호출자금지(법 제9조 제1항)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금지
신규 순환출자금지(법 제9조의2)	계열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법 제10조의2)	소속회사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지
계열 금융회사 소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제한 (법 제11조 제2호, 부칙 제9조)	계열 금융·보험회사가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원칙적 금지 및 예외적 허용(경영권 방어목적, 15% 행사 가능) ※ 계열사 간 합병, 영업양수는 제외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법 제11조의2)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또는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당해 회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나 50억원 이상 자금·자산 등 거래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그 내용을 공시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법 제11조의3)	비상장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등 중요정보를 공시
기업집단의 현황 등의 공시(법 제11조의4)	기업집단의 일반 현황, 주식소유 현황,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공시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법 제13조)	주식소유 현황, 재무 상황 및 다른 국내 회사 주식의 소유 현황을 신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법 제14조 제5항)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
관련 정보의 공개(법 제14조의5)	소속회사의 관련 정보를 공정위가 공개

2.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지침 목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 소비자기본법 및 동 시행령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

>> 기업결합

-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기업결합 심사기준
-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 경제력 집중 억제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 부당한 공동행위

-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 공동행위 심사기준
-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 사업자단체활동지침
-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불공정거래행위

-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 심사절차

-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기타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부여 등에 관한 규정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위의 지침
-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